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사건 2019 누 61740

도입

1. 본 의견서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유엔난민기구”)에서 2019 누 61740 사건과 관련해 제출¹하는 것으로, 해당 사건은 현재 대한민국 고등법원에 계류중입니다.
2. 유엔난민기구는 유엔총회가 난민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각국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할 임무를 부여한 기구로서 본 사안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² 유엔난민기구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난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체결과 비준을 촉진하고 적용을 감독하며 개정을 제안”합니다.³ 이러한 감독 책무는 1951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 년 협약”)⁴ 제 35 조 제 1 항⁵에서 재차 언급하고 있으며, 1967 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 년 의정서”)⁶ 제 II 조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3. 유엔난민기구의 감독 책무 수행은 부분적으로 국제난민 법률문서, 특히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에 포함된 조항과 용어의 의미에 관한 해석 지침의 발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지침에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유엔난민기구 편람”)⁷이 있으며, 본 편람은 여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들⁸로 보완됩니다.

¹ 본 의견서는 유엔난민기구 및 그 직원들에게 국제법 문서와 인정된 국제법 원칙상 적용되는 여하한 특권 혹은 면책권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인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유엔총회, 유엔의 특권과 면책에 관한 협약, 1946 년 2 월 13 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902.html>.

² 유엔총회, 유엔난민기구 규정, 1950 년 12 월 14 일, A/RES/428(V),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628.html>.

³ *Ibid.*, 제 8 항 제 a 호

⁴ 유엔총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 년 7 월 28 일, 유엔 조약 모음집 제 189 권, 2545 호, 제 137 쪽, <http://www.unhcr.org/3b66c2aa10.pdf>

⁵ 1951 년 협약 제 35(1)조에 따르면, 각국은 유엔난민기구에 협력을 약속하고, “이들 기관[UNHCR]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감독하는 책무의 수행에 있어서 이들 기관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⁶ *Ibid.*

⁷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에 따른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 편람과 지침, 2011 년 12 월, HCR/1P/ENG/REV. 3, <http://www.unhcr.org/3d58e13b4.pdf> .(번역자 주: 한글판, 서울, 2014 년 9 월).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들은 유엔난민기구 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부, 법조인, 의사결정자, 사법부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⁸ 특히,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의 맥락에서 군 복무에 기반한 난민 신청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 호 - 군 복무”)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 및 지역 협약상 난민의 정의에 근거한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에서의 난민 신청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양상”).

4. 본 유엔난민기구 편람은 캐나다, 영국, 미국의 대법원에서 “매우 관련깊으며 권위있는,”⁹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고 권위있는”¹⁰ 자료로서 “중요한 지침을”¹¹ 제공하며, “1951 년 협약 제 35 조에 따라, 당 기관이 협약 규정의 적용을 감독하는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할 계약국의 의무에 비추어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¹²한다고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편람과 지침은 1969 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 31 조 제 3 항 제 b 호에 따라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을 반영하는데 있어 유효한 해석의 출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¹³
5. 유엔난민기구는 정기적으로 의사결정권자 및 법원을 대상으로 1951 년 난민협약 규정의 적절한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많은 국가 및 사법권에서 제 3 자 의견서를 제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원 또는 다른 이해당사자가 직접 본 기관에 접촉해 특정한 법적 사안에 대해 유엔난민기구의 “*고유하면서 독보적인 전문지식*”¹⁴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951 년 협약을 감시하고 이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유엔난민기구는 전세계의 많은 사법권에서 참가인(intervenor)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그 가운데에는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사법재판소, 미국 대법원, 노르웨이 대법원, 영국 대법원(과거의 영국 상원 포함), 독일연방헌법재판소, 캐나다 대법원 등이 있습니다.
6. 본 의견서는 또한 대한민국 난민법(2013) 제 29 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준비되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 요청하는 경우 협력해야 한다. [...]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당 조항은 더 나아가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¹⁵
7. 항소인은 무력분쟁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서 시리아 정부로부터 징집당할 위험을 근거로 난민 신청을 한 시리아 국민입니다. 법무부는 항소인의 난민신청에 대해 1, 2 차 행정단계에서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인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⁹ *첸(Chan) v. 캐나다 (고용이민부 장관)*, [1995] 3 S.C.R. 593, 캐나다: 대법원, 1995 년 10 월 19 일, http://www.refworld.org/cases,CAN_SC,3ae6b68b4.html 제 46 항과 119 항; *캐나다(법무부장관) v. 워드(Ward)*, [1993] 2 S.C.R. 689, 캐나다:대법원, 1993 년 6 월 30 일, http://www.refworld.org/cases,CAN_SC,3ae6b673c.html 713-714 쪽.

¹⁰ *R v. 내무장관, Ex parte Adan*, 영국: 상원 (법률위원회), 2000 년 12 월 19 일, http://www.refworld.org/cases,GBR_HL,3ae6b73b0.html.

¹¹ *이민취화국 v. 카르도자-폰세카(Cardoza-Fonseca)*, 480 U.S. 421; 107 S. Ct. 1207; 94 L. Ed. 2d 434; 55 U.S.L.W. 4313, 미국 대법원, 1987 년 3 월 9 일, <http://www.refworld.org/cases,USSCT,3ae6b68d10.html>.

¹² *알 시리(Al-Sirri) (FC) (상고인) v 내무장관 (피상고인) 및 DD (아프가니스탄) (FC) (상고인) v 내무장관 (피상고인)*, [2012] UKSC 54, 영국: 대법원, 2012 년 11 월 21 일, http://www.refworld.org/cases,UK_SC,50b89fd62.html 제 36 항. 마찬가지로, 편람은 “협약상 의무에 대한 국제적 이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주는 지침으로 특히 유용”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R v. 내무장관, Ex parte Robinson*, 사건번호:FC3 96/7394/D, 영국: 항소법원(잉글랜드 및 웨일즈), 1997 년 7 월 11 일, http://www.refworld.org/cases,GBR_CA_CIV,3ae6b72c0.html 제 11 항.

¹³ *푸쉬파나탄(Pushpanathan) v 캐나다 (시민·이민부 장관)* [1998] 1 SCR 982 제 54 항; *R v. 내무장관, Ex parte Adan and Others*, 영국: 항소법원(잉글랜드 및 웨일즈), 1999 년 7 월 23 일, http://www.refworld.org/cases,GBR_CA_CIV,3ae6b6ad14.html, 제 71 항.

¹⁴ *R (EM (에리트레아)의 신청 관련) v. 내무장관*, [2014] UKSC 12, 영국: 대법원, 2014 년 2 월 19 일, 제 72 항, http://www.refworld.org/cases,UK_SC,5304d1354.html.

¹⁵ 대한민국, 2012 년, 법령 제 11298 호, 난민법, <http://www.refworld.org/docid/4fd5cd5a2.html>.

대부분의 시리아 비호 신청자와 달리 인도적 체류 지위¹⁶도 받지 못하였는데, 하급심은 항소인의 난민 지위 청구를 주로 박해에 대한 근거가 충분한 공포와 하나 이상의 협약 근거 사이의 연결점이 결여된 점, 시리아 정부에 의한 과거 박해를 증명하는 증거가 없는 점, 일반화된 폭력사태의 맥락에서 증명된 개인의 위험성이 결여된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출국명령 발부 후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점도 주요하게 고려했습니다.¹⁷ 법원은 나아가 국내 비호 신청자가 난민법상 인도적 체류 지위를 신청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인도적체류지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¹⁸

8. 이러한 배경에서, 유엔난민기구는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본 사건의 주요한 쟁점에 관한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본 의견서에서 유엔난민기구는 일반화된 분쟁과 폭력으로부터의 도피의 맥락에서의 개별화된 위험의 개념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견과 병역거부에 근거한 난민 신청의 결정에 관련된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 원칙들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해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에 따라, 퇴거 조치 이전에 독립적인 조사를 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뿐만 아니라, 난민신청 제출의 지연이 불인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추가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유엔난민기구는 (본 의견서에서) 시리아 아랍 공화국 상황에 대한 최신 출신국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9. 유엔난민기구는 본 의견서를 통해, 현재 심의중인 사안과 연관된 국제난민법 개념의 해석에 관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연관된 법리적 쟁점 사항만을 논의하고자 하며, 신청의 특정 사실관계 또는 양 당사자의 입장을 다루거나 논평하지 않고자 함을 밝힙니다.

1951년 협약 기준에 따른 난민의 보호

10. 1951년 협약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는 다음과 같이 난민을 정의합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¹⁶ 이는 '보충적 보호'의 형태로, 대한민국 난민법 제 2 조 3 항에서는 인도적체류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 1 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¹⁷ 대한민국의 난민법 제 8 조 제 1 항은 난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 준수해야 할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사무소장등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절차는 제 8 조 5 항에 따라 일부 생략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 1 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¹⁸ 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국내법상의 인도적 체류 지위에 관한 이슈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있으나, 제 2 조 제 3 항을 제외하고는 난민법과 난민법 시행령에서는 인도적 체류 지위의 부여에 관한 절차 또는 인도적 체류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없음에 주목한다. 유엔난민기구의 관점에 따르면, 중앙 전문기관에서 비호 신청자가 난민 지위나 다른 형태의 국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포괄적인 절차가, 국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식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한 절차는 집행정지 효과와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한 모든 공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래의 제 13 항과 14 항 참고.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국적국 밖에 있는 자, 또는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1. 대한민국의 난민법 제 2 조 제 1 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정의가 적용됩니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 지위 결정의 적극적인 근거가 되는 정의를 충족해야 난민으로 인정이 됩니다.¹⁹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두려움은 다섯가지 협약 사유 중 하나 이상과 관련되어야 하며,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에 따르면, “협약 사유는 유일하고 절대적일 필요는 없으나, 관련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합니다.”²⁰ 또한, 난민 신청자는 “해외에 거주한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²¹ 지연된 난민 인정 신청을 “남용적”이거나 “명백히 근거 없는” 신청으로 간주해서, 난민인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심사 절차를 보장받을 수 없게 해서는 안 됩니다.²² 당 사건의 맥락에 관련되는 난민 정의의 여러 측면들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2. 유엔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에 의해 설립된 정부간 기구인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of the High Commissioner’s Programme, 이하 ‘집행위원회’)는 여러 결정문(Conclusions)에서 “남용적” 또는 “명백히 근거 없는” 난민 신청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결정문은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되므로, 난민 보호의 법적 기준에 관한 해당 국가들의 입장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현재, 2000 년부터 회원국 지위를 가진 대한민국을 포함, 106 개국이 집행위원회 회원국으로 있습니다.²³ 집행위원회는 “명백히 남용적”이거나 “명백히 근거 없는” 국제보호 신청을 “명백히 거짓이거나 난민 지위 부여 기준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²⁴ 즉, 신청인이 “자신의 지위 결정과 관련하여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성질의 허위 주장을 하고, 추가 검토를 요하는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강제퇴거(deportation) 명령이나 보호(detention) 명령의 발부 이후에 제출된 난민 신청을 포함하여, 지연된 난민 신청 제출은 “명백히 근거가 없거나”, “명백히 남용적인” 사유를 이유로 난민 지위나 다른 형태의 국제 보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¹⁹ 유엔난민기구, 난민 사유의 입증책임과 기준, 1998 년 12 월 16 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338.html>. 신청자가 사유와 관련된 사실의 진실된 진술을 제공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한다. 난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관은 모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할 의무를 공유한다. 이는 대체로 심사관이 해당 신청인의 출신국의 객관적 상황을 숙지하고, 상식 수준의 관련 사항을 숙지하며, 신청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입증될 수 있는 주장 사실을 적절히 확인함으로써 달성된다.

²⁰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 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 년 협약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 및 1967 년 의정서의 맥락에서 젠더와 관련된 박해, 2002 년 5 월 7 일, 제 20 항,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d36f1c64.html>.

²¹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 94 항

²²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30 호(XXXIV), <https://www.refworld.org/docid/3ae68c6118.html>

²³ 유엔난민기구, 연도별 집행위원회 회원국, <https://www.unhcr.org/excom/announce/40112e984/excom-membership-date-admission-members.html>.

²⁴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30 호(XXXIV), 위 각주 22 참고.

13. 유엔난민기구는 1951 협약에서 제시된 난민 지위 기준들이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되어²⁵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히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입니다.²⁶ 비호 신청자가 1951년 협약의 난민 지위 기준 또는 보다 포괄적인 난민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난민 문서의 기준을²⁷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령 국제 또는 지역 인권법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에 근거한 인도주의적 또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포함하여 여타의 보완적인 형태의 국제적 보호²⁸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²⁹
14.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이 적절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중앙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먼저 비호 신청자가 난민 지위 자격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여타의 보충적 형태의 보호 필요성을 평가할 것을 유엔난민기구는 권고합니다.³⁰ 이러한 절차는 공정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절차중단의 효과가 있는 불복의 권리와 유엔난민기구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해야 합니다.³¹

전가된 정치적 의견과 병역

²⁵ 허위진술을 했다고 해서 난민 지위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고, 비호의 필요성을 없다는 뜻은 아니다. 거짓 진술 자체는 그 주장을 "명백한 허위"로 구분되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위임 난민심사절차에 적용되는 사례 처리 양식, 용어 및 개념의 비망록 및 용어집*, 2020년, 제 20쪽, <https://www.refworld.org/docid/5a2657e44.html>; 유엔난민기구, 명백한 근거가 없는 비호 신청에 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1992년 12월 1일, 제 397쪽,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1d83.html>.

²⁶ 유엔난민기구,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포함한 국제 보호 제공*, 2005년 6월 2일, EC/55/SC/CRP.16, 제 6, 26항, <https://www.refworld.org/docid/47fd49d.html>.

²⁷ 지역 난민 기준에 따르면,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수한 양상에 관한 협약*, 1969년 9월 10일, 1001 U.N.T.S. 45: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6018.html>; 카르타게나 선언,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와 파나마 내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콜로퀴움*, 1984년 11월 22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6ec.html>;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 *난민 지위와 처우에 관한 방콕 원칙*, 1966년 12월 31일, <https://www.refworld.org/docid/3de5f2d52.html>.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호 - 무력분쟁 및 폭력 양상*, 제 86, 87항.

²⁸ 유엔난민기구,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포함한 국제 보호 제공*, 2005년 6월 2일, EC/55/SC/CRP.16, 26항, <https://www.refworld.org/docid/47fd49d.html>.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15년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상원 법률 및 헌법 제정 위원회 (보충적 보호 및 기타 조치)*, 2015년 12월 3일, <https://www.refworld.org/docid/56669e5e4.html>, 제 13항. 유엔난민기구, *QD 사건에서 잉글랜드와 웨일즈 항소법원 앞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이라크) v. 내무장관*, 2009년 5월 31일, C5/2008/1706, 제 15항, <https://www.refworld.org/docid/4a6464e72.html>. 보충적 보호에 관하여: 유럽연합: 유럽연합이사회, *2011/95/EU 유럽 의회 및 2011년 12월 13일 국제 보호 수혜국으로서의 제 3국 출신자 또는 무국적자의 자격 기준, 난민 또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에 대한 통일된 지위, 보호의 내용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Recast)*, 2011년 11월 20일, OJ L. 337/9-337/26; 20.12.2011, 2011/95/EU: <http://www.refworld.org/docid/4f197df02.html>.

²⁹ 예: *고문방지협약*, 1984년 12월 10일, UNTS, Vol. 1465: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a94.html>, 제 85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66년 12월 16일, UNTS, Vol. 999, 제 171쪽,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aa0.html>; 유럽인권협약, 11번과 14번의 협약에 의해 수정됨, 1950년 11월 4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b04.html>.

³⁰ 이러한 절차는 2000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의해 국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식별하는데 가장 명확하고,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수단으로서 주목되어 왔다. 유엔난민기구, *국제 보호/제 3의 트랙에 관한 국제 협의: 보충적 보호*, 2001년 9월 4일, EC/GC/01/18: <https://www.refworld.org/docid/3bfa84345.html>, 제 9항. 집행 이사회 결론 8, <https://www.unhcr.org/excom/exconc/3ae68c6e4/determination-refugee-status.html>.

³¹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호 - 쟁점*, 32항,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호: 무력분쟁과 폭력 양상*, 제 8과 87항; 집행이사회 결론 87 (L) 1999, (f)항; 집행이사회 결론 9 (LI) 2000. 유엔난민기구, *보충적 형태의 보호를 포함한 국제 보호 제공*, 2005년 6월 2일, EC/55/SC/CRP.16, 제 27항: <https://www.refworld.org/docid/47fd49d.html>; 유엔난민기구, *국제 보호/제 3의 트랙에 관한 국제 협의: 보충적 보호*, 2001년 9월 4일, 제 9-10-11 제 e항, <https://www.refworld.org/docid/3bfa84345.html>.

15. 정치적 의견에 관한 협약상 사유에서는, 신청인에게 정치적 의견이나(주로 정부나 사회의 일부와는 다른), 자신이 이러한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다는 전가된 정치적 의견³²으로 인해 박해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두려움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³³ 난민의 정의는 1951 년 협약의 보호를 받는 정치적 견해로 간주되기 위해 신청인이 자신의 믿음 또는 행위가 정치적인임을 설명하는 것을 필수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관점에 따르면,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포괄적이며, 국가, 정부, 사회, 혹은 정책이 관여된 모든 사항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³⁴
16. 전가된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캐나다 대법원의 *Canada (Attorney General) v. Ward* 판결 이후로 세계 각국의 최고 법원에서 분석된 바 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쟁점이 되는 정치적 의견은 공공연히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인지되거나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정치적 의견이 신청인의 진실한 믿음에 반드시 합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박해자의 인식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³⁵
17. 유사하게, 미국 제 9 회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Mario Ernesto Navas v.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이민 귀화국) 판결에서 “비호 신청자들은 간주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즉 박해자가 신청자에게 전가한 정치적 의견을 박해사유로 성립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³⁶
18. 영국 대법원도 “간주된 의견을 사유로 개인이 박해의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원칙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³⁷ 최근 영국의 상급 행정심판소(Upper Tribunal) (Immigration and Asylum Chamber)는 *MSM (Somalia)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판결에서 유럽연합 자격 지침 10 조 제 1 항 제 e 호의 “정치적 의견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제 6 조에 언급된 잠재적 박해자 및 이들의 정책과 방식에 관한 의견, 생각, 믿음을 포함하며 이는 신청자가 그러한 의견, 생각과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지 여부와 무관하다”는 문언을 인용하며 “위 문언은 실제적 정치적

³² 각주 19 참조.

³³ 정치적 중립성이나 정치적 견해가 없는 것 또한 포함한다. *RT (짐바브웨) 외. v 내무장관*, [2012] UKSC 38, 영국:대법원, 2012년 7월 25일, http://www.refworld.org/cases,UK_SC,500fdacb2.html. 영국 대법원은 정치적 견해를 갖지 않을 권리 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지 않을 권리와 정치적 신념을 가질 권리를 달리 취급하는 원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유럽인권협약 제 10 조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의견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 [2012] UKSC 38, 영국 대법원, 2012년 7월 25일, 제 36 항, http://www.refworld.org/cases,UK_SC,500fdacb2.html, 참고.

³⁴ Guy Goodwin-Gill and Jane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74 (3rd ed. 2007), 제 87 쪽;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 호 - 젠더*, 제 32 항;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38 항 참고.

³⁵ 캐나다 (법무장관) v. 워드(Ward), [1993] 2 S.C.R. 689, 캐나다: 대법원, 1993년 6월 30일, 제 746-747 쪽, <https://scc-csc.lexum.com/scc-csc/scc-csc/en/1023/1/document.do>.

³⁶ *Mario Ernesto Navas v.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98-70363, 미국 제 9 회 순회 항소 법원, 2000년 6월 20일, http://www.refworld.org/cases,USA_CA_9,4152e0fb15.html.

³⁷ *RT (짐바브웨) 외. v 내무장관*, [2012] UKSC 38, 영국:대법원, 2012년 7월 25일, http://www.refworld.org/cases,UK_SC,500fdacb2.html. 정치적 의견에 대한 논쟁에 더해, 법원은 정치적 의견을 갖지 않을 권리 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제 36 항 참고.

의견과 간주된 정치적 의견의 두 가지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 두 경우 모두 보호의 대상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³⁸

19.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에서는, 이에 관련된 당사자의 전략이나 전술, 활동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일 경우, 무력 분쟁 당사자에 동조하거나 지원하거나 경제적으로 기여하길 거부할 경우, 또한, 무력 분쟁 당사자의 편을 들지 않거나 이들의 규범 및 관습에 순응하지 않는 경우, - 박해자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 박해자의 정치적 목적을 비판하거나 종교적 사회적 관습 및 관행을 위반하는 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박해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반대 행위나 입장, 행동은 특정 민족 혹은 사회 집단과 관련이 있거나 이러한 집단에 소속된 인물이 특정 정치적인 입장이나 종교적(혹은 비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고 여기거나 생각하게 할 수 있습니다.³⁹
20. 병역 거부와 관련된 비호신청 사건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두려움과 1951년 협약의 정치적 의견 사유와의 연관성을 근거로 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관계에 따라, 군 복무에 대한 거부는 실제적이거나 전가된 정치적 의견으로 인지될 수 있습니다. 후자와 관련하여 정권은 분쟁 참여에 대한 개인적 거부를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발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탈영이나 기피⁴⁰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⁴¹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위험

21. 1951년 협약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문언에 맥락상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는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로부터 도피한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1951년 협약은 평시와 "전시의" 박해로부터 도피하는 난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에 따라 요구되는 분석은 하나 이상의 협약 사유에 근거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한 공포/두려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⁴²
22. 무력 분쟁과 폭력 사태 속에서 신청인은 박해의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또는 인구 전체가 박해의 위험이 있어서 해당 집단에 속한 개개인이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⁴³ 특정 지역 사회의 다수 혹은 전체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해서, 특정 개인의 난민신청사유의 유효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며 집단의 규모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⁴⁴ 판단의 기준은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³⁸ MSM (언론인; 정치적 견해; 위험) 소말리아 v. 내무장관, [2015] UKUT 00413 (IAC), 영국 상원 (Immigration and Asylum Chamber), 2015년 7월 30일, 제 33항, http://www.refworld.org/cases.GBR_UTIAC.55ba10194.html.

³⁹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37항.

⁴⁰ “징병 기피는 의무적 군 복무제도에 따른 신병 모집이나 소집에 등록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기피 현상은 기피자가 해외로 도주하거나 특히 소집 영장을 군 당국에 제출하러 가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다. (...) 징병 기피는 실제적인 등록 요구나 징집을 예상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 징병 기피는 양심적 이유 혹은 다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호 - 군 복무, 제 3항.

⁴¹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호 - 군 복무, 제 52항.

⁴²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10항.

⁴³ Ibid., 제 17항.

⁴⁴ 유엔난민기구, 1951년 난민 지위 관련 협약 제 1 조 해석, 2001년 4월, 제 20항, <http://www.refworld.org/docid/3b20a3914.html>.

개인의 두려움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무력 분쟁과 폭력의 상황이 전체 지역 사회나 민간인 일반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개인이 가진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근거의 충분성을 약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합니다.⁴⁵

23. 예를 들어,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속에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공습이나 집속탄, 통폭탄, 화학 무기, 포병 사격, 저격, 사제 폭탄, 지뢰, 차량 폭탄, 자살 폭탄범, 포위 작전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위협에 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에의 노출은 개별적 또는 누적적으로 1951년 협약의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에 명시된 박해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⁴⁶

24. 대표적인 난민법학자 Guy S. Goodwin-Gill 과 공동저자인 Jane McAdam 이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국제법상의 난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협약상 사유와 연관되었거나 협약상 사유에 의해 추동되는 무력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정하는 논리는 불명확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⁴⁷ 이러한 접근방식의 오류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들은 무력분쟁과 폭력사태가 인종학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위 논리에 따르면, 그 누구도 난민 지위를 받을 수 없음을 예로 제시합니다.⁴⁸ 유엔난민기구의 관점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만연된 폭력이 일반화되고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두려움과 1951년 협약상 사유간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종종 잘못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해의 위협에 대한 평가의 미래지향적 성격

25. 난민 정의는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입니다. 1951년 협약은 과거 박해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 출신국에 머물 경우, 박해의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해받을 수 있다는 공포/두려움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미래지향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⁴⁹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두려움”은 과거에 반드시 박해가 발생했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발생한 박해는 계속되는 공포/두려움의 근거가 충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⁵⁰ 국제 난민 보호는 그 본질상 예방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신청인은 발각되어 박해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이전에 난민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⁵¹

⁴⁵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17 항. 유럽인권재판소에 따르면 “잘 알려진 일반적인 위협에 근거한 비호 신청과 관련하여, 그러한 위협에 대한 정보가 다양한 출처를 통하여 자유롭게 확인될 수 있을 때, 추방 사건에서 협약 제 2 조 및 제 3 조에 따라 국가에 부과되는 의무는 당국이 자신의 조치에 수반되는 그러한 위협에 대한 평가를 이행하는 것이다.”; F.G. v 스웨덴, 소송 번호 43611/11, 유럽의회: 유럽인권재판소, 2016년 3월 23일, 제 126 항, <http://www.refworld.org/docid/56fd485a4.html>.

⁴⁶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18 항.

⁴⁷ Guy Goodwin-Gill and Jane McAdam, *The Refugee in International Law*, (3rd ed. 2007), 제 128 쪽.

⁴⁸ *Ibid.*

⁴⁹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2 호 - 무력 분쟁 및 폭력 사태*, 제 24 항.

⁵⁰ 1951년 협약에 열거된 이유 중 하나로 인한 박해의 피해자라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충분히 근거가 있다고 추정될 수 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박해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박해의 위협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는 사람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 45 항.

⁵¹ *Re C*, 난민지위항소 제 70366/97 호에서, 뉴질랜드 난민지위항소법원은 제 1 조 제 A 항 제 2 호는 ‘미래지향적 또는 예측적, 객관적인 위협평가를 요하며, 과거의 박해 유무를 검토하여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과거에 잔혹한 박해로 고통받았던(그러나 더이상은 박해 위협을 겪지 않는) 사람을 출신국으로 돌아가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26. 병역 거부에 근거한 모든 비호 신청자들이 과거에 박해를 받은 것은 아님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박해의 유무는 1951년 협약에 따라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선결요건이 아니며, 사실상 박해에 대한 공포/두려움이 충분히 근거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신청인이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지는 경우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⁵²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 42 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출신국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협약상의 난민정의에 언급된 이유로 견딜 수 없게 되거나 그가 출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같은 이유로 견딜 수 없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인의 두려움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강조 추가]

강제송환금지와 국제적 보호의 원칙

27.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게 될 영토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의 의무는 1951년 협약 제 33 조에서 가장 명확히 표현된 국제 난민법의 초석⁵³입니다. 협약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⁵⁴

“체약국은 난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여서는 아니된다.”⁵⁵

밝혔다. http://www.refworld.org/cases,NZL_RSAA,3ae6b73f14.html. *카라나카람(Karanakaran) v 내무장관, 세들리(Sedley) 판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겪은 경험이 전체 그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해를 아직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나치 하의 독일에서 때맞춰 탈출한 수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할 수 있다.)도 남아있었다라면 겪었을 박해에 대해 매우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00] EWCA Civ. 11, 영국: 항소법원 (잉글랜드 및 웨일즈), 2000년 1월 25일, 제 15항, http://www.refworld.org/cases,GBR_CA_CIV,47bc14622.html.

⁵² HJ (이란); Bromfield v. Mukasey, US, 543 F.3d 1070, 1076-77 (2008년 9월경); RRT 사건 번호 1102877, [2012] RRTA 101, 호주, 난민 심사 재판소, 2012년 2월 23일, 제 91항, http://www.refworld.org/cases,AUS_RRT,4f8410a52.html.

⁵³ Elihu Lauterpacht 와 Daniel Bethlehem,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범위와 내용: 의견”, E.Feller, V.Türk 와 F.Nicholson (편자), 국제법 하에서의 난민 보호: 국제적 보호에 관한 유엔난민기구의 국제 협의,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2003), 87-177 쪽 참조. 유엔난민기구,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의무의 역외 적용에 관한 자문의견*, 2007년 1월 26일,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refworld/docid/438c6d972.html>.

⁵⁴ 1951년 협약의 일부 조항과 달리, 제 33 조는 체약국가의 영토에 있는 난민들의 합법적인 거주에 의존하지 않는다.

⁵⁵ 1951년 협약 제 33 조 제 2 항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를 예정하는 반면, 국제인권법과 대부분의 지역적 난민 문서들은 그 어떠한 예외도 없는 절대적 금지를 규정한다.

28.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 난민 보호의 필수적이고 구속력 있으며 훼손할 수 없는⁵⁶ 구성요소로서, 여러 국제⁵⁷ 및 지역의 난민 문서들과⁵⁸ 인권 문서⁵⁹에 재차 규정되었습니다. 위 문서들과 더불어, 여러 국가의 헌법 및 국내법 역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⁶⁰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국제관습법 규범으로,⁶¹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체결국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가를 구속합니다.⁶² 근본적이고 훼손할 수 없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성격은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의 여러 결정문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습니다.⁶³

29. 강제송환(refoulement)의 금지는 강제퇴거(deportation), 추방(expulsion), 인도(extradition), 비공식적 이동(informal transfer) 또는 ‘송환’(rendition)과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퇴거(removal)에 적용됩니다.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in any manner whatsoever)’ 추방(expulsion) 또는 송환(return)(refoulement)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1951년 협약 제 33조 제 1항의 문언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⁶⁴ 위 문언은 그 범주가 완결적 목록에 속하지 않은

⁵⁶ 1951년 협약 제 42조 제 1항과 1967년 의정서 제 VII조 제 1항은 제 33조를 1951년 협약의 규정 중 적용면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항으로 나열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또는 1967년 의정서에 대한 체결국들의 선언, 2002년 1월 16일, HCR/MMSP/2001/09, 제 4항, <http://www.unhcr.org/refworld/docid/3d60f5557.html>.

⁵⁷ 명시적 강제송환 금지 규정은 1984년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 3조에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어떠한 당사국도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역시 회복불가능한 침해의 실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개인을 해당 국가의 영토에서 인도, 퇴거, 추방 기타 이동시켜서는 안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20호: 제 7항(고문 또는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 대우 또는 처벌의 금지), 1992년 3월 10일, U>N> Doc. HRI/GEN/1/Rev.7. 제 9항 및 규약 당사국의 일반적 법적 의무의 성격에 관한 일반논평 31호, U.N. Doc. CCPR/C/21/Rev.1/Add.13, 2004년 5월 26일, 제 12항 참조.

⁵⁸ 아시아-아프리카 법적 자문 위원회가 1966년 방콕에서 열린 8차 회의 당시 채택한 난민의 처우에 관한 방콕 원칙 제 III조 제 3항 참조. 해당 조항은 “최우선시되는 국가안보 또는 주민보호의 사유를 제외하고, 본 원칙에 따라 비호를 구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생명, 신체적 완전성 또는 자유를 위협하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 해당 영토로의 귀환 또는 영토에서의 체류로 귀결되는 국경에서의 거부, 송환 또는 강제퇴거와 같은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다음 협약에도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아프리카 통일 기구(OAU), 아프리카 난민 문제의 특수한 양상에 관한 협약(“OAU 협약”) 제 II조 제 3항, 그리고 난민에 관한 카타헤나 선언,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와 파나마 내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콜로키엄, 1984년 11월 22일, <https://www.refworld.org/docid/3ae6b36ec.html>.

⁵⁹ 미주 대륙의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인권에 관한 아메리카 협약 제 22조 제 8항에 새겨져 있다. 위 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출신국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을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지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생명 또는 자유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퇴거하거나 송환해서는 안된다.” 한편 유럽인권재판소는 강제송환금지가 유럽인권협약 제 3조에 내재된 의무라고 판시한 바 있다.

⁶⁰ 유엔난민기구, 강제송환금지에 관한 지침, 1977년 8월 23일, EC/SCP/2, 제 11항, <https://www.refworld.org/docid/3ae68ccd10.html>.

⁶¹ 결론 III(5): 난민에 관한 카타헤나 선언, 중앙 아메리카, 멕시코와 파나마 내 난민의 국제적 보호에 관한 콜로키엄, 1984년 11월 22일, <http://www.refworld.org/docid/3ae6b36ec.html>. 이 원칙은 또한 자문 의견 OC-21/14 “이주 환경 및 국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권리 및 보장”에서 미주 인권 재판소에 의해 확인되었다, 2014년 8월 19일, 제 211항, <https://www.refworld.org/cases,IACRTHR,54129c854.html> and 자문의견 OC-25/18, 2018년 5월 30일, 제 181항, <https://www.refworld.org/cases,IACRTHR,5c87ec454.html>.

⁶² Ibid, 자문의견 OC-21/14, 제 211항.

⁶³ 집행이사회 결정문 25호 (XXXIII) 1982, (b); 29호 (XXXIV) 1983, (c)항; 50호 (XXXIX) 1988, (g)항; 52호 (XXXIX) 1988, (5)항; 55호 (XL) 1989, (d)항; 62호 (XLI) 1990, (a)항 (iii); 65호 (XLII) 1991, (c)항; 68호 (XLIII) 1992, (f)항; 71호 (XLIV) 1993, (g)항; 74호 (XLV) 1994, (g)항; 77호 (XLVI) 1995, (a)항; 81호 (XLVIII) 1997, (h)항; 82호 (XLVIII) 1997, (d)(i)항; 85호 (XLIX) 1998, (q)항; 91호 (LII) 2001, (a)항; 94호 (LIII) 2002, (c)(i)항; No. 99 (LV) 2004, (1)항; 103호 (LVI) 2005, (m)항; 108호 (LIX) 2008, (a)항.

⁶⁴ 유엔난민기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송환금지 의무의 역외 적용에 관한 자문의견, 2007년 1월 26일 (‘유엔난민기구 자문의견’), 제 7항, <https://www.refworld.org/docid/45f17ala4.html>.

넓은 범위의 국가행위들에 강제송환금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30. 유엔난민기구는 특정 국가의 행위가 특정인을 타국에서의 박해 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 특히 해당인이 그러한 박해 또는 학대에 대한 두려움을 표시했거나, 해당인 또는 그가 속한 집단의 개별적 상황 또는 특징이 당국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위험을 시사하는 경우, 해당인을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 발생함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⁶⁵

31. 강제송환금지 의무에 따라, 각국은 출신국 또는 제 3 국으로 퇴거조치(removal measure)를 집행하기 전에, 자국 영토 또는 관할로부터 퇴거시키려는 사람에게 박해, 심각한 인권침해 또는 다른 심각한 위해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⁶⁶ 또한, 각국은 퇴거명령(removal order)을 집행하기 이전을 포함하여 해당인이 보호를 구하는 이유를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⁶⁷

유엔난민기구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951 년 협약 및 1967 년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각국은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이에게 영토로의 접근을 허용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비호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⁶⁸

32. 마지막으로, 1951 년 협약이 정의하는 난민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즉시 해당 협약의 의미에 따른 난민이므로, 난민지위결정은 선언적입니다. 즉, 어떤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난민인 것이 아니라,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⁶⁵ 유럽인권재판소 *Hirsi v. Italy* 사건에서의 유엔난민기구 구두의견 4 쪽 참고, <https://www.refworld.org/pdfid/4e0356d42f.pdf>. 유럽인권재판소 대재판부, *N.D. and N.T. v. Spain* 사건에서의 유엔난민기구 구두의견 제 6 쪽 참고, <http://www.refworld.org/docid/5bb3873b4.html>.

⁶⁶ 유엔난민기구, 유럽인권재판소 *A.S.N. and T.K.M v The Netherlands* (Appl. No. 68377/17) 사건에 제출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18 년 3 월 20 일, 68377/17, <https://www.refworld.org/docid/5b92f83cc4.html>. 아울러 유엔난민기구, 유럽인권재판소 *D.A. and others v. Poland* (application no. 51246/17) 사건에 제출된 유엔난민기구 의견서, 2018 년 2 월 5 일, 51246/17, <https://www.refworld.org/docid/5a9d6e414.html>.

⁶⁷ 유럽인권재판소, *M.S.S. v. Belgium and Greece*, Appl. no. 30696/09, 2011 년 1 월 21 일, 제 359 항, <http://www.refworld.org/docid/4d39bc7f2.html>. C, KMF, BF (신청인) 와 이민국장, 보안장관(피고)와 유엔난민기구(개입자) 사이의 최종 상소 2011 년 제 18, 19 및 20 호 (민사), 홍콩 중심법원, 2013 년 3 월 25 일, 56 항과 64 항 <http://www.refworld.org/docid/515010a52.html>; 유엔난민기구, 홍콩 특별행정구역 중심법원, C, KMF, BF (신청인)와 이민국장, 보안장관(피고) 사건 개입, 2013 년 1 월 31 일, 민사 상소 2011 년 제 18, 19 및 20 호, 74 항 및 75 항, <http://www.refworld.org/docid/510a74ce2.html>.

⁶⁸ 유엔난민기구, 자문의견, 제 8 항: “1951 년 협약과 1967 년 의정서는 국제보호를 부여할 대상자를 정의하고, 불법적인 입국 또는 체제에 대한 형벌금지(제 31 조)와 강제송환금지 원칙(제 33 조) 등 핵심 원칙을 확립한다. 다만 난민지위결정을 위한 절차는 착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는 대량 난민 발생 상황의 맥락 밖에서 1951 년 협약의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비호 절차(공정하고 효율적인 비호 절차), EC/GC/01/12, 2001 년 5 월 31 일, 제 4-5 항 참조. 또한 집행 위원회, 결정문 제 81 호 (XLVII) “일반” (1997), 제(h)항; 결정문 제 82 호 (XLVII), “비호 보장”(1997), 제(d)(iii)항; 결정문 제 85 호 (XLIX), “국제 보호” (1998), 제(q)항, 결정문 제 99 호 (LV), “국제 보호에 관한 일반 결정문” (2004), 제(1)항”. 또한, P. Weis, 난민협약, 1951: Paul Weis 박사에 의한 입안 과정(travaux préparatoires)에 대한 분석 해설 및 논평,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5), 제 342 쪽.

따라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난민으로 인정된 이들 뿐만 아니라 지위에 대한 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⁶⁹

33.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에 따르면, 특정 신청인이 퇴거명령(deportation order)을 받은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 퇴거의 집행 이전에 강제송환의 위험을 판단할 의무가 해당국에 있습니다. 해당인이 퇴거 이후에 박해 또는 심각한 위해에 직면하게 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은 먼저 신청인의 1951년 협약에 따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난민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도적 또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국제적 보호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시리아 내 분쟁과 폭력으로부터 피신하는 사람들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평가

34. 유엔난민기구는 분쟁과 폭력 양상에서 가해진 침해가 박해에 이르는 것인지, 또는 협약상 사유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결정권자가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난민기구에서 발간한 다음의 문서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아랍 공화국으로부터 피신하는 사람들에 관한 국제적 보호 고려* (보호 필요성에 관해 핵심적이며 구체적인 분석 제공); *국가정황 지침: 반정부 시위 참여; 징병 기피; 부분적 사면조치의 발급과 적용, (기존의) 반정부 점령 영토 거주; 해외에서의 여권 발급, 귀환과 “신분 조정”(최신 발간).*⁷⁰ 위 문서들의 핵심적 목적 중 하나는 결정권자를 위해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지침과 위에서 언급된 추가적 *국가정황정보(COI) 지침*은, 폭넓은 출처로부터 심도있게 조사한 국가정황정보에 근거하며, 신뢰성을 위해 엄격한 검토를 거친 자료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재판부에서 위 문서들에 포함된 정보를 면밀히 고려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35. 심각하고 광범위한 국제인도법 위반, 인권법의 위배와 침해, 그리고 영토 내 많은 지역에서 지속되는 무력 분쟁에 비추어,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로부터의 민간인들의 피신을 난민의 이동으로 여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1951년 협약 제 1조 제 A항 제 2호에 근거한 난민 정의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에 따른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⁷¹

36. 접근가능한 국가정황정보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2011년 이후 반정부 시위를 가혹하게 탄압해 왔으며, 점령한 영토 내에서 실질적인 또는 전가된 반대의견을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억압, 처벌하고 있습니다.⁷² 시리아 정부는 정치적 반대의견 여부를 판단함에

⁶⁹ 유엔난민기구 편람, 제 28항. 아울러, 유엔난민기구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6호 (XXVIII) - 1977, (c)항; 집행위원회 결정문 제 79호 (XLVII) - 1996, (i)(j)항; 유엔난민기구, 유엔난민기구 1975-2017 집행위원회 채택 국제적 보호에 관한 결정문 (결정문 제 1-114호), 2017년 10월, <https://www.refworld.org/docid/5a2ead6b4.html>.

⁷⁰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피난민에 관한 국제적 보호사항 - 업데이트 V*, 2017년 11월 3일, <https://www.refworld.org/docid/59f365034.html>. 유엔난민기구, *국가정황 지침: 반정부 시위 참여; 징병 기피; 부분적 사면조치의 발급과 적용; (기존의) 반정부 점령 영토 거주; 해외에서의 여권 발급; 귀환과 “신분 조정”*, 2020년 5월 7일, <https://www.refworld.org/docid/5ec4fcff4.html>.

⁷¹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피난민에 관한 국제적 보호사항 - 업데이트 V*, 2017년 11월 3일, <https://www.refworld.org/docid/59f365034.html>.

⁷²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가 시리아에서 정적을 체계적으로 구금, 고문 및 살해하고 있다.” 유럽헌법인권센터 (ECCHR), *2019 ECCHR 연간보고서*, 2020, <https://bit.ly/35q9ufv> 제 11쪽. “시리아 정권은 일상적으로 표현을 불법화하여 개인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권을 공개적 또는 사적으로 비판할 수 없었다. (...) 정부는 정치적 회의를 감시하고 정보원 네트워크에 의존했다.” 미국무부, *2019년 국가 보고 및 인권 관행 - 시리아*, 2020년 3월 11일, www.ecoi.net/en/document/2026345.html. “시리아 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있어 매우 광범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 또는 형태로 표현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비판, 반대 또는 정부에 대한 불충분한 충성은⁷³ 일상적으로 해당 개인에 대한 심각한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⁷⁴

억압적인 정권과 내전에 참여하는 다른 무장세력에 의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정권은 진정한 정적을 금지하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혹하게 제어하고 있다. (...) 정부는 아사드의 통치를 위협할 수 있는 정적의 활동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강력한 정보 및 안보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 정부는 개인적 그리고 온라인 논의에 대한 강력한 감시를 시행하며 지배하는 영토에서 반대견해를 잔혹하게 처벌한다”; 프리덤하우스, *전세계 자유 2020 - 시리아*, 2020년 3월, <https://freedomhouse.org/country/Syria/freedom-world/20209>;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아랍 공화국의 피난민에 관한 국제적 보호사항 - 업데이트 V*, 2017년 11월 3일, 제 35-36 쪽(및 인용된 문헌), <https://www.refworld.org/docid/59f365034.html> 참고.

⁷³ 시리아 통신사에 의해 운영되는 중앙 집중 감시시스템을 포함하여 비판자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보고된 감시와 관련하여, “자의적 체포는 당국이 언제든지 정권의 통제를 위협한다고 간주되는 블로그 게시, 트위터, 페이스북에 댓글 달기, 사진 공유, 또는 비디오 업로드와 같은 온라인 활동을 이유로 인터넷 사용자를 체포할 수 있다는 공포를 촉발시켰다”. 미국무부, *2019년 국가 보고 및 인권 보고서 - 시리아*, 2020년 3월 11일, www.ecoi.net/en/document/2026345.html. “시리아 정보기관, 특히 군사 정보기관은 이유 없이 정치적 반대자, 야권 회원과 인권활동가들의 정보를 수집해왔다. 시리아로부터의 수많은 보고에 따르면 바샤를 알 아사드 정부는 탈취한 정보를 부분적으로 비판자들을 식별, 체포 및 심문하는 데 활용한다.” ECCHR, *시리아 내 감시: 유럽 기업들이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020년 5월 7일, <https://bit.ly/2xwGdD0>. Hivos, *국경을 넘어 침묵시키다: 초국경적 억압과 이집트, 시리아 및 이란으로부터 망명한 활동가에 대한 디지털 협박*, 2020년 2월, <https://bit.ly/3a7FTb5>; 프리덤하우스, *온라인 자유 2019 - 시리아*, 2019년 11월 4일, <https://freedomhouse.org/country/syria/freedom-net/2019>.

⁷⁴ “국제 앰네스티 영국지부 위기 캠페인 매니저 Kristyan Benedict 에 따르면 “정권이 불충하다고 간주하는 사람 누구든지 아사드 정권의 악몽과 같은, 고문이 조직적이며 만연한 감옥 시스템에서의 구금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는 정치활동가, 시위자, 인권활동가, 기자, 변호사, 의사와 인도적 구호대원을 포함한다.” 신 아메리카 안보 센터의 대표 Nicholas Heras 는 “(...)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반대자 또는 미국이나 터키와 같은 외국 세력과 연이 있는 사람 모두 적이다. (...) 정부는 여전히 스스로를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혀 관대해지거나 타협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The Independent, *아사드 정권 탈환한 지역에 대한 탄압으로 수천명의 시리아인 구금되다*, 2019년 6월 6일, <https://bit.ly/2V1UwIS>.

37. (예전) 반대 세력 주둔 지역 출신 민간인(특히 전투연령의 남성과 남아),⁷⁵ 징병기피자와 탈영병,⁷⁶ 지역위원회 위원,⁷⁷ 활동가,⁷⁸ 기자와 시민기자,⁷⁹ 인도주의 구호 대원과 민방위

⁷⁵ “Duma, Jalaa 와 Dhameer 시들에서 [다마스쿠스 주 농촌지역], 정부 보안군은 입대 연령 남성에 대한 가장 큰 세력의 체포작전을 실시하였다.”; The Carter Center, *주간 분쟁 요약 2019 년 9 월 23-29 일*, 2019 년 10 월 4 일, 접속: <https://bit.ly/2W3I2iT>, 4 쪽. “예를 들어, Yabrud 와 Qalamun (Rif Dilmashq)에서 20 세에서 25 세 사이의 남성 수십 명이 보고기간동안 체포 및 강제실종 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 *독립적 국제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9 년 8 월 15 일, www.ecoi.net/en/file/local/2016403/a_hrc_42_51_E, 제 67 항. “위원회는 앞서 15 세 이상 남성들이 정부 보안 및 무장세력 또는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민병대에 의해 대규모 체포, 검문소 또는 가택수색 중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되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체계적 양상을 기록한 바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서의 사망통지*, 2018 년 11 월 28 일, <https://bit.ly/2FypAsI>, 제 1 항.

⁷⁶ “보고기간 동안, 활동가, 민방위 자원자, 징병 탈영자, 최근 귀환민 등 일반적으로 반대진영 지지자로 간주되는 이들은 자의적 구금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유엔인권이사회, *독립적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9 년 1 월 31 일; <https://bit.ly/2nHPkvi>, 제 73 항. “시리아 정부군은 나아가 군에의 강제입대와 예비군 복무를 목적으로 모든 사회 부문에서 18 세에서 42 세 사이 연령대를 표적으로 단속 및 집단체포를 실시하였다”; 인권을 위한 시리아 네트워크(SNHR), *2019 년 9 월 시리아에서 적어도 441 건의 자의적 체포가 기록되다*, 2019 년 10 월 2 일, <https://bit.ly/f2pa5yy>, 5 쪽. “체포된 사람들은 군사법원으로 인계되기 전 심문을 위해 안보 지부로 이송되었다. 수십명의 [팔레스타인인 징병 기피자들은] 그 과정에서 고문을 받아 사망하였다”; Omran for Strategic Studies, *2019 년 시리아 군사기관 - 중파주의, 민병대와 외국투자*, 2019 년 5 월, <http://bit.ly/2XiPeGZ>, 72-73 쪽. The Washington Institute, *아사드의 무장해제, 비군사화와 재건 전략이 실제로 시리아 무장단체들을 통합할 수 있는가?* 2019 년 3 월 6 일, <https://bit.ly/2WSC6sH>; Atlantic Council, *시리아 정부의 사면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집 계속되다*, 2019 년 2 월 13 일, <https://bit.ly/2Yqfzn9>; 유엔인권이사회, *독립적 국제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9 년 1 월 31 일, <https://bit.ly/2nHPkvi>, 제 73 항; 중앙아시아 모니터, *중재가 채워진 채 군복무를 강요 받는 시리아 남성들의 사진이 퍼져나가다*, 2018 년 12 월 4 일, <https://bit.ly/2VYvHkF>.

⁷⁷ “체포의 표적이 되는 또다른 집단은 반정부 세력들이 동부 Ghouta 지역을 지배할 때 운영되어행정 관리를 맡은 지역 위원회의 예전 위원들이다”; Atlantic Council, *Ghouta 화해를 깨다*, <https://bit.ly/35hivXC>. Syria Direct, “*화해*”로부터 1 년: *시리아 남부에서 체포와 실종이 난무하다*, 2019 년 7 월 18 일, <https://bit.ly/2GiADW1>; European Institute for Peace (EIP), *시리아 난민 귀환: 위험, 안전 위기와 정보부족*, 2019 년 7 월, <https://bit.ly/2MW5U59>, 30, 31 쪽; Enab Baladi, *시리아 지배권 이전 후 1 년: 동부 구타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가?*, 2019 년 2 월 21 일, <https://wp.me/p7cv3Y-d18>; Qantara, *시리아 반정부 진영 하의 지역정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2018 년 12 월 20 일, <https://bit.ly/2PsL273>.

⁷⁸ “정권은 일반적으로 개혁 또는 인권 관련 미션을 가진 비정부기구의 등록을 거부하며, 정기적으로 단속과 수색을 실시하여 시민활동가 및 정치활동가를 구금한다”; 프리덤하우스, *전세계 자유 2020 - 시리아*, 2020 년 3 월, <https://freedomhouse.org/country/syria/freedom-world/2020>. Syrian Observatory for Human Rights (SOHR), *시내 담벼락 위 반정부 낙서 퍼진 후 Rif Dimashq 의 Zabadani 시에서 대규모 체포 작전 실시*, 2019 년 9 월 17 일, <https://bit.ly/32MlwNX>;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적 국제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9 년 1 월 31 일, <https://bit.ly/2nHPkvi>, 제 73 항.

⁷⁹ “(...) 정부 점령 지역에서 표현의 자유가 강력히 제한되고 있으며, 기자나 국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검열, 구금, 고문과 억류 중 사망에 직면해 있다”; 프리덤하우스, *전세계 자유 2019 - 시리아*, 2019 년 2 월 4 일, www.ecoi.net/en/document/2016055.html. “2011 년 반정부 시위 발발 이후 당국은 다수의 이름난 블로거와 시민기자를 포함한 수백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구금했다 (...) 시민기자, 블로거와 여타 피구금자들은 구금되면 자주 당국에 의한 폭행과 고문을 견뎌내야 한다”; 프리덤하우스, *인터넷상 자유 2018 - 시리아*, 2018 년 11 월 1 일, www.ecoi.net/en/document/2001025.html. 국경없는기자회, *시리아 - 견딜 수 없는 상황*, 2020 년 5 월 7 일, <https://rsf.org/en/syria>; 언론인보호위원회, *시리아 언론인 Alaa Nayef al- al-Khalidi 국가 고문에 의해 사망, 공무원이 가족에게 알리다*, 2019 년 7 월 22 일, <https://cpi.org/x/78b8>; Syria Direct, “*침묵의 왕국*” 귀환과 더불어, *기자들 검문소와 씨름하다, 정부 지배 시리아에서의 비밀경찰 - 음지로부터의 보고*, 2018 년 12 월 10 일, <http://bit.ly/2mWePJE>.

자원자,⁸⁰ 의료진,⁸¹ 인권활동가,⁸² 그리고 학자들은⁸³ 흔히 반정부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속합니다. [강조 추가]

38. 유엔난민기구의 국제 보호 고려사항(업데이트 V)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시리아 분쟁의 특별한 특징은, 분쟁의 여러 가담자들이 종종 보다 큰 규모의 집단의 사람들에 대해⁸⁴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며, 개인을 선별하지 않고 분쟁의 상대 당사자에 대한 실제 또는 간주된 지지를 이유로, 부정적 처우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⁸⁵ 그러므로, 신청인의 국제 보호 신청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신청인의 이력과 관련된 모든 요소와 신청인의 출신 및 거주지역과 해당 지역에서의 분쟁 진행상황, 종교적/민족적 배경, 성, 나이, 직업/교육적 배경, 가족과 부족관계, 정치적 활동, 군복무와

⁸⁰ “(...) 위원회는 Dar’a 주 전역에 걸친 강제실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에 의한 공격을 알림으로써 ‘국가에 반역했다’고 간주된 인도주의 구호대원이었다”; 유엔인권이사회, *독립적 국제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9년 8월 15일, www.ecoi.net/en/file/local/2016403/a_hrc_42_51_E, 제 69 항. 하얀 헬멧 (시리아 민방위) 회원을 포함한 구호대원들이 정부의 표적이 되는 것에 관해: SNHR, *시리아 내전 중 인도주의 영역에 대한 가장 주목할만한 침해*, 2019년 3월 13일, <https://bit.ly/2TKIzYe>, 5 쪽; 유엔인권이사회, *독립적 국제 조사위원회 보고서*, 2019년 1월 31일, <https://bit.ly/2nHPkvi>, 제 73 항; 휴먼라이트워치, *하얀 헬멧에 의한 대피가 시리아에서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다*, 2018년 7월 23일, <https://bit.ly/2LGySCO>.

⁸¹ “시리아 내전 전기간에 걸쳐, 시리아 정부는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의사, 간호사 등 병원, 진료소와 야외에서 환자와 부상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살해해왔다. 보건 전문가들은 나아가 체포, 실종, 구금, 고문과 처형되었다. 많은 경우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환자들을 진료하겠다는 직업적 사명을 따랐다는 이유다. PHR는 2011년 분쟁 개시부터 2019년 8월까지 912명의 의료진의 사망을 기록했다”; Physicians for Human Rights (PHR), *시리아에서 의료진 표적이 되다*, 2019, <https://bit.ly/2mt9okH>. 뉴욕 타임즈, *의사가 범피자로 취급 받는 곳*, 2019년 12월 20일, <https://nyti.ms/2FqSDN4>; 대서양 위원회, *구타 화해를 깨다*, 2020년 5월 7일, <https://bit.ly/35hivXC>. SOHR, *정권 안보세력 수도 다마스쿠스의 외곽지역 Douma 시 출신 의사와 다수의 간호사를 체포하다*, 2019년 9월 28일, <https://bit.ly/2onRaCz>; World Medical Association, *세계 보건 전문가들 시리아 병원에 대한 공격 종단을 요구하다*, 2019년 9월 16일, <https://bit.ly/2pJn6BL>; 국제 엠네스티, *시리아: 가족들 실종된 가족구성원에 관한 해답을 알아서 찾으려 노력되다*, 2019년 8월 30일, <https://bit.ly/2MKH2yg>.

⁸² “시리아 정부와 그 동맹국들은 나아가 민간인들을 굴복시키고 복종을 강제하기 위한 보다 넓은 전쟁전략의 일환으로 보건시설과 의료계 종사자들을 체계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왔다. (...) PHR가 면담한 구금경험이 있는 의료계 종사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보건서비스 종사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반정부 진영 회원 또는 지지자들에 대한 보건서비스 제공에 실제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다고 간주되었기 때문에 체포되었다”; PHR, “*나의 유일한 죄는 의사였다는 것이다*” - 시리아 정부가 어떻게 해서 의료계 종사자들을 체포, 구금과 고문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지, 2019년 12월 4일, <https://bit.ly/37YWYnQ>. Frontline Defenders, #Syria, 2020년 5월 7일, <https://bit.ly/35R1vrD>; 국제 엠네스티, *시리아: 가족들 실종된 가족구성원에 관한 해답을 알아서 찾으려 노력되다*, 2019년 8월 30일, <https://bit.ly/2MKH2y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시리아 위기가 세계를 부서버리다*” - 중동(시리아) 상황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Arria Formula* 에 따른 보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Zeid Ra'ad Al Hussein 의 발언, 2018년 3월 19일, <https://bit.ly/2m6SZC8>.

⁸³ “정부 지배 지역에서 대학 교수들이 반대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구금당했으며, 어떤 이들은 정부 반대자들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였다”; 프리덤하우스, *전세계 자유 2020 - 시리아*, 2020년 3월, <https://freedomhouse.org/country/syria/freedom-world/2020>.

⁸⁴ “국가 전역에 걸쳐 지역 공동체들이 검문소, 전선과 진행 중인 충돌에 의해 서로 분리되고 분절되어 왔다. 폭력 또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실향을 한 신앙 또는 민족 공동체들은 서로 분치는 경향이 있었다. 안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피난이 실제 또는 간주된 정치적 지지와 지리적 분단을 일치시켰다. 그러한 지리적 분단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시리아 아랍 공화국에 대한 독립적 조사 위원회 보고서*, 2016년 2월 11일, <http://www.refworld.org/docid/56d6b3843ea.html>, 제 95 항.

⁸⁵ 무력 분쟁과 폭력의 상황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나 특정 인구 전체가 1951년 협약상 사유로 식별되거나 박해의 표적이 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무력 분쟁과 폭력 양상과 관련된 난민지위에 관한 지침에서 “무력 분쟁과 폭력은 인종, 민족, 종교, 정치, 성 또는 사회적 집단간의 구분에 뿌리를 두거나, 그러한 구분에 의해 촉발 또는 진행되거나 그러한 요소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무작위적으로 보이는 행동(예를 들어 박해자가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자 한 것은 아닌 경우)은, 실제로는 거주민들이 무장 분쟁 또는 폭력의 어느 한쪽의 실제 또는 간주된 지지자인 공동체 또는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삼은 것일 수도 있다. 무력 분쟁 또는 폭력 양상에서 누가 특정 일방에 속하거나 관계가 있다고 간주되거나 인식되는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행위자들에 의해 종종 폭넓게 해석되며 전투원의 가족, 아니면 같은 종교적 또는 민족적 집단에 속하거나 특정 동네, 마을 또는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포괄할 수 있다. 협약상 사유는 많은 경우 가족관계, 공동체, 지리적 또는 다른 관계를 근거로 귀속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12 호*, 2016년 12월 2일, <http://www.refworld.org/docid/583595ff4.html>, 제 33 항.

출국방법(합법/불법적 출국)을 포함하여 신청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리아 내 분쟁 당사자들이 개인 및 집단 또는 공동체 전체에 대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함에 있어 매우 넓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을 전체론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신청인이 1951년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신청인 이력의 모든 요소가 개별적 그리고 다른 요소와 조합하여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⁸⁶

39. 유엔난민기구의 국제 보호 고려사항(업데이트 V)은 국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을 가능성이 큰 13개의 프로파일의 사람들을 식별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본 의견서와 관련된 시리아 민간인들과 기존의 상거소자들의 프로파일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1. 정부에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 야당 구성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 시위자, 운동가 및 기타 야권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지되는 사람, 반정부 무장 단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사람, 정부 및 바트당 관계자 중 직무유기자, 그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인지된 도심 지역, 소도시, 마을의 민간인 거주자.

2. 병역기피자 및 탈영자 병역기피자

[...]

4. IS의 사실상의 통제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에서 IS에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5. 사실상의 통제나 영향력 하에 있는 지역에서 반정부 무장 단체에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들. [...]⁸⁷

40. 시리아의 경우, 징집 거부는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⁸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징집의 대체 또는 대안적 방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⁸⁹ 독립적인 읍저버들은 시리아 정부가 병역 기피를 정치적이고, 반정부적인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정부를 반대하는 행위로 간주될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시위에 참여하거나, 언론 또는 소셜 미디어에 실제 혹은 그렇게 간주되는 정부를 반대하는 견해를 표현하거나, 현재 또는 과거에 반정부군이 점령한 지역 출신의 경우, 가족 중 정부에 반대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⁸⁶ 유엔난민기구, 국가정황 지침: 반정부 시위 참여; 징병 기피; 부분적 사면조치의 발급과 적용; (기존의) 반정부 점령 영토 거주; 해외에서의 여권 발급; 귀환과 “신분 조정”, 2020년 5월 7일, <https://www.refworld.org/docid/5ec4fcff4.html>.

⁸⁷ 프로파일은 문서 작성 시 가능한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단순히 여기에 나열된 프로파일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이 자동으로 가치가 없다고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아랍 공화국 피난민에 관한 국제적 보호사항 업데이트 V, 2017년 11월 3일, <https://www.refworld.org/docid/59f365034.html>, 34쪽.

⁸⁸ 정해진 예고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는 병역 기피자는 정규복무 외에 1개월에서 6개월(평시)에 이르는 징역에 처한다. 전시에서는 병역 기피에 대한 징계는 상황에 따라 최대 5년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다. 복역을 마친 후 병역 기피자는 정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1950년 법 제 61호, 개정(군사 형법) [시리아 아랍공화국], 2017년 2월 16일, <http://www.refworld.org/docid/58a5e1b34.html>.

⁸⁹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 지도자만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병역면제를 받으며 이 중 이슬람 종교지도자는 면책료를 내야 한다; 미국 국무부, 2018년 국제 종교 자유:시리아, 2019년 6월 21일, www.ecoi.net/en/document/2011033.html. TIMEP, TIMEP 브리프: 징병법, 2019년 8월 22일, <https://bit.ly/2Y8sDRw>; 유엔인권이사회, 최종견해: 시리아 아랍공화국, 2005년 8월 9일, CCPR/CO/84/SYR, 제 11항, www.refworld.org/docid/43f2ff770.html. 병역의무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권리. 또한,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제 1조 제 A항 제 2호에 따른 군 복무 관련 난민 지위 신청(혹은 ‘유엔난민기구 군 복무 관련 지침’), 2013년 12월 3일, 제 8-11항, www.refworld.org/docid/529ee33b4.html.

또는 해외로 도주한 경우⁹⁰가 포함됩니다. 정부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병역 기피자는 병역 기피에 대한 관련 형사 처벌로 인한 제재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⁹¹ 이는 체포, 심문, 구금 및 군 복무에 배치될 경우 받을 가혹한 처우를 포함합니다.⁹² 실제로, 군사 형법에 따라 형사 처벌(감금형)을 받는 대신, 병역 기피자는 체포 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최소한의 훈련을 받은 후 최전선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병역 기피자의 불충스러운 행위에 대한 대가입니다.⁹³ 구금중인 병역

⁹⁰ 휴먼라이트워치의 Sara Kayyali 에 따르면, "(...) 이전에 반군에 의해 통제되었다가 재탈환된 지역에 있었고, 시리아 정부에 의해 강제 징집된 개인들은 반정부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외에서 귀국하는 개인들도 반정부 의견을 내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높다. 반정부적 통제를 받고 있는 지역 출신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인식될 수 있다."; Sara Kayyali 와의 이메일 교신에서, 시리아 연구자, 중동 및 북아프리카 부서, 휴먼라이트워치, 2020년 3월 9일 (유엔난민기구와의 이메일 교신에서). "두 가지 출처로부터 나는 개인의 처우가 그 사람이 현 정권과 얼마나 연관되어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관성'이 확실한 Alawites(아랍어로 'Wasta')는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며, 언급된 두 경우에서 약 8000 유로의 '보상'(아랍어로 'Badal')을 지불해야 했다. 다른 경우, 특히 반군이 종종 목격되는 지역(동부 Ghouta 등) 출신의 노동자 계급의 수니파 남성들은 훨씬 더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다. 후자는 군대에 불충실하다고 인식되고, 일상적으로 학대 당하고, 폭력적이고 위협한 의식(ritual)을 겪으며, 종종 유럽의 군대 기준에 따를 경우 고문에 해당하는 육체적 훈련을 견뎌야 한다. 어떤 이들은 전선에서 총상을 입기도 하며, 그들의 죽음은 '자살'이나 '사고' 또는 '전투'로 기인된다. (강조 추가); Ugur Umit Üngör, 홀로코스트 및 대학살 연구 교수, 전쟁 연구소, 홀로코스트 및 대학살 연구, 암스테르담, 2020년 4월 8일 (유엔난민기구와의 이메일 교신에서).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아랍공화국의 피난민에 관한 국제적 보호사항 - 업데이트 V, 2017년 11월 3일, 제 39-40 쪽, www.refworld.org/docid/59f365034.html. (이 안에 참조되어 있는 출처 포함)

⁹¹ "협약 사유 [정치적 또는 전가된 정치적 의견]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에 기여 요인이 되어야 할 뿐이며, 그것이 지배적이거나 심지어 유일한 원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강조 추가);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제 1조 제 A 항 제 2호에 따른 군 복무 관련 난민 지위 신청(혹은 유엔난민기구 군 복무 관련 지침), 2013년 12월 3일, 제 47 항, www.refworld.org/docid/529ee33b4.html.

⁹² "박해자의 의도 또는 동기는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협약상의 사유간에 인과관계를 성립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 국제적 보호에 관한 지침 제 10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의 제 1조 제 A 항 제 2호에 따른 군 복무 관련 난민 지위 신청(혹은 유엔난민기구 군 복무 관련 지침), 2013년 12월 3일, 제 48 항, www.refworld.org/docid/529ee33b4.html.

⁹³ Ugur Umit Üngör 교수에 의하면, "공식적으로는 군법 미준수로 재판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시리아 청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아는 바로는, 시리아 정권은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으며, 가장 위험한 [sic] 과제(최전선에서)를 완수하기 위해, 징집 기피자를 직접 군대에 보내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혹독한 처벌을 받는 '약식 군법 재판'('mahkama maydaniya')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유죄판결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될 정도로 운이 나쁜 사람은 시리아의 수용소에서 다른 모든 비참한 희생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가장 최근 연구는 정부에 반대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범주 (예: 탈환한 지역 사람들, 이전의 반대와 운동가들, 반대파 활동가들)의 개인이 특히나 위협적인 협박을 받고 있다. 강제 실종, 체포, 즉결 처형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들은 실제로 처벌의 한 형태로 최전방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이는 친 정부 세력이 그러한 남성들의 '불충실성'에 느끼는 깊은 혐오를 살펴봐야 할 수 있다. 정권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은 몇 년 동안 아들이 '고향'과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오는 데 비해, 병역 기피자들은 쉽게 벗어나려고 하며, 이에 따른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4월 8일 암스테르담의 전쟁, 홀로코스트 및 대량학살 연구소의 홀로코스트 및 대량학살 연구 교수인 우구르 우미트 응거 박사(Ungör) "징용에 양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법적 제도가 재량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국가보호를 위한 봉사문화를 정착시키기보다는 징용을 처벌과 권력통합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Ugur Umit Üngör, 홀로코스트 및 대학살 연구 교수, 전쟁 연구소, 홀로코스트 및 대학살 연구, 암스테르담, 2020년 4월 8일 (유엔난민기구와의 이메일 교신에서), "징용에 양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법적 제도가 재량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국가보호를 위한 서비스 정신 문화를 정착시키기보다는 징집을 처벌과 권력통합의 도구로 사용해 왔다." (강조 추가); TIMEP, TIMEP 브리프: 징병법, 2019년 8월 22일, <https://bit.ly/2Y8sDRw>. "수많은 보도와 증언은 '평화 협정' 시기와 동시에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반체제적 요소'에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중앙 정보국으로부터 동시에 수배를 받고, 군부가 Idlib 과 Hama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최전선에 배치하는 만연한 관행을 말해준다. 일단 징집이 되면 이들은 곧바로 최전선으로 보내져 전투들의 손에 죽거나 최전선과는 별개의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 징집은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인구를 인구통계학적으로 조작하려는 정권의 비전을 가로막는 반체제적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었다. 이러한 '항복'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의 방법에 대해 증언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강조 추가); Syrian Association for Citizens' Dignity (SACD), 죽음, 실종, 두려움과 화해하기, 2019년 7월 24일, <https://bit.ly/2VJQmWx> ('평화' 지역에서 최전선 처형의 예시와 함께). 전직 반체제 병사 배치와 관련하여, "(...)

기피자는 시리아에서 고문 및 학대 형태의 처우를 받을 위험에 처해지며⁹⁴ 이는 시리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보고됩니다.⁹⁵ 마지막으로, 2011년부터 징집병들은 의무적인 군복무 기간을 넘는 장기간의 군 복무를 강요받아오고 있습니다.⁹⁶

2019년 5월, 1사단에서 복무하던 **Damascus** 지역 출신 반체제 병사 여러 명이 Hama와 Idlib에서 교전 중 사망했고, 또 다른 전직 반체제 병사는 9사단 내 대전차유도미사일(ATGM) 부대에 있는 Latakia의 Jableh에 있는 러시아인들로부터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대규모 반체제 병사들이 5군단 4여단에 합류하여 현재 Palmyra 주변의 Homs 사막에 주둔하고 있다. 현재 그곳에 주둔하고 있는 Palmyra NDF 조직원과의 한 인터뷰에 따르면, 이 전직 반체제 병사들은 IS가 통제하는 Bashiri 산 주변 순찰에 투입되고, 매일 수십 명씩 죽어가고 있다. 이 소식통은 '이 사람들이 거의 지원도 받지 않고 사막으로 배치되어 좀처럼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더라도 다시 배치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반체제 병사들을 많이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듯하다". (강조 추가); Middle East Institute (MEI), 사자와 독수리: 시리아 아랍공화국 군의 파괴와 재탄생, 2019년 7월 18일, <https://bit.ly/2VCIOVi>. "많은 지역 주민들은 평화 협정의 일환으로 항복하고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의했던 전직 병사들이 대신 군대에 징집되거나 구금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징집병은 군 복무 중 끔찍한 상황을 견디며 정권 공세에 이용되었다."; The New Arab, 시리아 위클리: Idlib에 쏟아진 공격, 2019년 3월 11일, <https://bit.ly/3BLqfUM>. Al-Tal 시에서 최전선까지의 징병 연령의 남성의 배치, 원본 문서의 섹션 4 참고 ("과거 반군 관할 지역 거주").

⁹⁴ "(...) 정치 인권 운동가, 언론 종사자, 구호 활동가, 그리고 이와 유사한 양심수들을 포함한 시리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 봉기에 관련된 대부분의 억류자들은 정권이 다른 억류자들에게 강요한 증언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혐의로 보안부에 의해 고발되었다. (...) 시리아 정권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사라진 억류자와 개인은 예외적으로 잔인하고 가학적인 고문 수법을 당하는데, 이는 2011년 3월 민주주의를 위한 민중 봉기가 시작된 이후 **복수심의 성격을 띠고 있다**, 2020년 4월 2일, 제 5-6쪽, <https://bit.ly/2Vyb75Z>. "그러나 인권운동가, 출신국 정황정보, 지역 비정부기구는 심문을 통해 **의심되는 반체제 인물을 처벌하기 위해 심문을 포함한 빈번한 고문, 학대, 비인간적 처우를 일삼은 수천 건의 신뢰할 수 있는 사례를 보고했다**. (...) 휴먼라이츠워치 및 출신국 정황정보에 의하면 공군, 정치안보부, 안보국, 군정보국이 운영하는 **검문소와 정권 시설에서 의심되는 반체제 인물들을 상대로 정기적 고문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강조 추가); 미국 국무부, 2019년 시리아 국가 보고서, 2020년 3월 11일, www.ecoi.net/en/document/2026345.html.

⁹⁵ "체포되는 순간부터, 억류자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인권을 박탈당하고 여러 형태의 고문을 당한다 (...). 구속의 첫 순간부터 행해지는 어떤 형태의 고문을 당하지 않은 남성이나 여성 억류자는 거의 없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 시리아 정권에 의해 구치소와 군 병원에서 자행되는 72가지 고문 방법에 관한 문서, 2019년 10월 21일, 제 2쪽, <https://bit.ly/2p7PMEh>. 유엔 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철저하게 실패한' 시리아 억류자; '무처벌을 중단하고 이 공포를 멈춰달라'고 간청한 피해자, 2019년 8월 7일, <https://bit.ly/2TjZcYe>;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시리아 정권의 감옥: 수만 명의 시리아인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지하실, 2019년 7월 30일, <https://bit.ly/2o8dlfi>; 시리아인권네트워크, 시리아에서 고문으로 인해 177명의 아동과 62명의 여성을 포함한 최소 14,227명의 사망자 발생, 2019년 6월 27일, <https://bit.ly/2mvVTBb>; 국제 엠네스티 외, 시리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그리워하는 가족들에게 말하라, 2019년 5월 13일, www.ecoi.net/en/document/2015414.html; 뉴욕 타임즈, 시리아의 비밀 고문방을 중심으로: 어떻게 Bashar al-Assad는 반대파를 제거하였는가, 2019년 5월 11일, <https://nyti.ms/2Hbjl8K>; 인권을 위한 변호사와 의사 모임(LDHR), "죽음은 일상이 되었다", 2018년 8월, 제 32쪽, <https://bit.ly/2nRsWjD>.

⁹⁶ (교육 수준에 따라) 2011년부터 18~21개월의 의무 복무 기간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징병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전쟁 기간 동안, 이 정권은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징집병들을 군대에 가두두었다. 2019년 7월 '우리는 전역하고 싶다'는 제목의 소셜 미디어 캠페인이 2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지난 2017년 처음 등장한 이 캠페인은 그 동안 의무 복무 이상의 투쟁을 벌여온 장병들을 제대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 캠페인으로 인해 보고된 전역 명령은 없었지만, 시리아 국영 SANA 통신은 앞서 201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전역 명령을 보도한 바 있다"; TIMEP, TIMEP 지침: 징병법, 2019년 8월 22일, <https://bit.ly/2Y8sDRw>. "시리아의 징집병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제대로 된 끼니가 주어지지 않으며, 장기간 복무를 하게 된다."; Omran 전략 연구 센터, 시리아 군대의 변혁: 변화와 구조조정의 과제, 2018년 12월 31일, 제 87쪽, <https://bit.ly/2VFLwJB>. "2011년부터 시리아 정권은 수천 명의 시리아 남성들을 불특정 기간 동안 비상병으로 복무시키고 있으며, 연이어서 징집병들을 제대시키길 거부하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무려 8년 동안 군에서 복무했다."; The Atlantic Council, 사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시리아 정부의 강제 징집, 2019년 2월 13일, <https://bit.ly/2KBAsXA>. AFP, 시리아 군이 2011년 전에 징집된 이들을 전역시켰다, 2019년 1월 2일, <https://bit.ly/2Sa8TsA>; 로이터스 통신, 시리아군 일부 징집병, 예비역 장교들의 전역, 2018년 12월 10일, <https://reut.rs/35dJqnm>; 시리아 국영 SANA 통신, 징집된 병사들의 제대에 관한 육군 총사령부의 명령 제 103호, 2018년 12월 31일, <https://bit.ly/3cSUOIF>; Asharq Al-Awsat, 시리아 정권의 면죄 약속을 경계하는 탈영병들, 2018년 11월 14일, <https://bit.ly/3cYzCAv>. 2020년 3월 말, 육군과 국군 총사령부가 내린 두 개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2020년 4월 7일자로 특정 범주의 'kept-in-service' 징집병과 'call up' 예비병의 복무가 종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은 실제로 징집되지 않은 사람이나 향후 징집될 사람, 또는 탈영병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시리아 국영 SANA 통신 (아랍어), 2020년 3월 29일,

41. 군사작전, 포위,⁹⁷ “평화” 협정의 조합을 통해 시리아 정부군⁹⁸은 국가 주요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행사하였는데,⁹⁹ 이러한 지역은 과거 반정부 무장단체(Damascus 및 지방 Damascus, Dera’a 그리고 북부 Homs 주)¹⁰⁰나 '이라크와 알삼의 이슬람 국가'(ISIS)가 점령했던 지역을 포함합니다.¹⁰¹ [……] “평화 협정”에도 불구하고, 2011 년 이후 체포되어 온 수많은 정부 반대자 및 정부 반대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는

<https://bit.ly/3faW4sd>. Enab Baladi, 정권 무장 유지 후 제대에 필사적인 시리아 병사들, 2022년 4월 16일, <https://bit.ly/2VX9Jey>.

⁹⁷ 전쟁 중 포위 전략은 항복할 때까지 '집단지 처벌'을 통해 사회가 굶주리게 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위반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약 250만 명이 포위 전략을 당했는데, 2017년에 Ghouta, Deir el-Zour, Aleppo, Al-Rastan 및 다른 지역에서 97만 명이 동시에 포위 당했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포위 조건에는 식량 및 인도적 지원 거부, 인구 이동 제한, 다양한 종류의 무기로 포위 지역을 목표로 공격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시리아 정책 연구소 (Syrian Center for Policy Research), 식량 안보 및 시리아 분쟁, 2019년 5월, 제 8쪽, <https://bit.ly/2ktkdCz>. “2011년 시리아 민주봉기가 시작된 이래, 분쟁의 당사자들은 서로 상이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시리아 정부와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통제력을 잃었던 마을과 동네, 도시들을 응징하기 위해 포위 전략을 사용했다. 인도적 지원 차단, 민간인의 통행 제한, 병원을 겨냥한 공격과 같은 전술은 최대의 고통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Siege Watch, 눈에서 멀어지면 마을에서도 멀어진다; 시리아 포위 전략의 결과, 2019년 3월, 제 8쪽, <https://bit.ly/2mlXUzg>. “그러나 시리아 아랍 공화국 전역에 발생하는 포위 전략은 정기적으로 집단 처벌의 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는데, 이는 시민 생활의 생존력을 잠식하고, 포위된 민간인들이 그들을 관할하는 집단에 대항하게 만들고, 항복을 강요하고, 반대 세력을 강제로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 동 Ghouta의 포위와 탈환, 2018년 6월 20일, A/HRC/38/CRP.3, 제 76항, <https://www.ecoi.net/en/document/1438560.html>. World Peace Foundation, 기아 범죄에 대한 책임: 시리아, 정책 개요 제 3호, 2019년 6월, <https://bit.ly/2paixjR>.

⁹⁸ “정부군”이라는 용어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시리아 군, 보안 및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친 정부 무장 단체를 포함하는데, 친 정부 무장 단체의 경우, 정부, 러시아 군, Herbolah, Iraqi, 그리고 다른 Shi’ite 민병대를 포함한 친 정부 외국 단체와 연계되어 있다. “정권 세력은 무력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공군과 이란이 지원하는 군에 의존하고 있다.”; 시리아 연구 그룹 (Syria Study Group), 최종 보고서 및 권고사항, 2019년 9월, 제 25-26쪽, <https://bit.ly/2utiEsV>.

⁹⁹ “정부는 2018년 동안 군사작전 및 대규모 인명 손실, 대규모 이동 및 민간 기반 시설의 광범위한 파괴를 수반하는 지역 협정을 통해 NSAG[미국이 무장 단체]가 보유한 여러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2019년 인도적 니즈 개요: 시리아 아랍 공화국 (Humanitarian Needs Overview: Syrian Arab Republic), 2019년 3월 1일, 제36쪽, <https://bit.ly/2N8mLS6>. “정부군은 금지된 무기, 무차별 폭력, 인도적 지원 제한 등 불법 전략을 사용해 이 지역에서 반정부 단체에게 항복을 강요해 집단 이주를 초래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 2019년 세계 보고서: 시리아, 2019년 1월 17일, www.ecoi.net/en/document/2002172.html.

¹⁰⁰ “반정부 무장단체”란 다양한 미국이 무장단체 및 동맹을 말하며,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시리아 정부를 타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다. 이 용어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UNSC)이 테러 집단으로 지정한 지하디스트 단체인 Hay’at Tahrir Al-Sham (HTS, 이전: Jabhat Al-Nusra/JAN)와 Al-Qa’eda에 소속되었고 2018년 초반에 HTS가 Al-Qa’eda와 절연하자 JAN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Hurras Al-Din도 포함되어 있다. UNSC, Levant 사람을 위한 Al-Nusrah 전선, 2018년 6월 5일, <https://bit.ly/2mpgsi8>. 2018년에는 Ghouta 동부와 지방 Damascus 주의 Qalamoun 지역 (2018년 4월), Homs 주의 북부 지역 (2018년 5월), Damascus 남부 지역의 Yalda 근교, Babila, Beit Sahem (2018년 5월), 그리고 Quneitra 주의 Dera’a 지역 (2018년 7월) 등 반정부 무장단체가 보유한 지역의 상당 부분을 정부군이 탈환으로 인해 시리아 북서부 지역으로 대규모의 탈영과 민간인의 대피가 이어졌다. 2019년 8월, 정부군은 전략적으로 Aleppo-Damascus 고속도로에 자리 잡고 있는 Khan Sheikhoun (Idlib 주) 마을 등 Hama 북부와 Idlib의 지역을 탈환했고, 2020년 1월에는 Idlib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마을인 Maarat Al-Numan을 탈환했다; Reuters, Idlib 시 남부로 진입한 시리아 군, 2020년 1월 28일, <https://nyti.ms/2U0Mpw5>; BBC, Khan Sheikhoun: 시리아 반군, 5년 만에 주요 도시에서 철수, 2019년 8월 20일, <https://bbc.in/2mdGyVD>; Associated Press (AP), 2012년 이후 반군이 점령한 NW 영토를 탈환한 시리아, 2019년 8월 23일, <https://yhoo.it/2ncyq8y>; BBC, 시리아 봉기의 발상지 Derra, 정부군 탈환, 2018년 7월 12일, <https://bbc.in/2utQhHt>; 로이터스 통신, 마지막 포위 지역에서 철수하는 시리아 반군들, 2018년 5월 16일, <https://reut.rs/2rNK8EJ>; 프랑스 24, 시리아군, 동부 Ghouta 탈환 주장, 2018년 4월 15일, <http://f24.my/2qia.T>.

¹⁰¹ 2017년 말부터 정부군은 Deir Ez-Zour 주의 Deir Ez-Zour 시 그리고 Albu Kamal 시 (2017년 11월), Yarmouk의 남 Damascus 부근, Qadam, Hajar Al-Aswad와 Tadamon (2018년 5월), 그리고 남동부 시리아 Al-Safa 지역 (2018년 11월) 등을 ISIS로부터 영토를 탈환했다; Reuters, 시리아군, 남동 사막 지역의 IS로 전진하다, 2018년 11월 18일, <https://reut.rs/2PAUwyl>; BBC, 시리아 전쟁 : IS 무장세력, 'Damascus 교외를 떠나다', 2018년 5월 20일, <https://bbc.in/2lZ2sLT>.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¹⁰² 정부군이 Al-Tal 시를 재탈환한 데 이어,¹⁰³ 주택에 대한 급습과 정부 운영 검문소에서의 체포를 통한 자의적 체포와 강제 징집 등이 재개되었으며, 2019 년과 2020 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¹⁰⁴ 반정부 무장단체가 점령하는 지역에서 친인척과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된 개인은 정부 보안 서비스에 의해 감시 및 자의적 체포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¹⁰⁵

¹⁰² 2017 년 5 월 현재, 위반 문서 센터(VDC)는 정부 구금소에 구금 되어 있는 al-Tal 시 출신이 1,000 명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시리아의 "지역평화협정": 평화 구축의 불가능성*, 2017 년 6 월, 제 15 쪽, <https://bit.ly/3eyFxOp>.

¹⁰³ “강제로 항복한 타 지역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시리아-아랍 적신월사 (SARC) 외 국제 자선단체들도 이 지역에 접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친정부 세력이 미래의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었는데, 특히 구금이 그 중 하나이다.**” (강조 추가); 시리아 연구소/ PAX, *Siege Watch: 2016년 11월 - 2017년 1월 시리아 포위 지역에 대한 5분기 보고서*, 제39쪽, <https://bit.ly/34Tx03U>. “정권은 때때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 Al-Tal 시에서, 전기가 복구되지 않았고 친정체제인 Qalamoun Shield 민병대에 의해 임의적으로 체포되었다.” (강조 추가); Raymond Hinnebusch 와 Omar Imady, *시리아의 평화 협정*, 2017년, 제4쪽, <https://bit.ly/2VqSsdK>. “지난 며칠 동안 시리아 정권 보안국은 Damascus 북쪽의 al-Tal 시에서 대규모 급습과 체포 운동을 벌였다. 2016년 11월 정권과 맺은 평화 협정에 따라 법적 '유효한' 상태였음에도 일부 주민들은 체포된다.”; Zaman Al Wasl, *Al-Tal 마을: 현 정권과의 평화 협정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청년들*, 2017년 7월 22일, <https://bit.ly/2x3JwBG>. Syria Call, *시리아 정권이 Damascus의 'al-Tal' 시에서 무더기로 체포*, 2018년 12월 1일, <https://bit.ly/3bu5hJN>; Syria Call, *평화의 지역인 Damascus에서 대규모 단속*, 2018년 1-월 21일, <https://bit.ly/3cCELxV>; SOHR, *현 공군 정보국, Damascus와 al-Tal 시의 동부 Ghouta에서 지역 통제 전 의료원에서 근무한 여성 7명을 포함한 주민 115명 체포*, 2018년 9월 13일, <https://bit.ly/3eE05F8>; 시리아인권네트워크, *시리아 정권, 6월 5일 Damascus 근교의 al-Tal 시에서 민간인 여러 명 체포*, 2018년 6월 6일, <https://bit.ly/2yvTxrJ>; 시리아인권네트워크, *시리아 군이 3월 27일 Damascus 근교의 al-Tal 시에서 민간인 여러 명 체포*, 2018년 3월 27일, <https://bit.ly/3cHezT1>; 시리아인권네트워크, *1월 9일 Damascus 근교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체포된 민간인*, 2018년 1월 9일, <https://bit.ly/3cz64Jm>; 시리아인권네트워크, *12월 28일 Damascus 근교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체포된 민간인*, 2017년 12월 28일, <https://bit.ly/3cz5Tha>; 시리아인권네트워크, *12월 2일 Damascus 근교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체포된 민간인*, 2017년 12월 2일, <https://bit.ly/3eJ64so>; Syria Direct, “종료는 없다: 체포·징집 공포 속 평화 협정 후에도 자택 가까이 머무는 북 Damascus 교외 거주민, 2017년 11월 9일, <https://bit.ly/2XVzX2t>; 시리아인권네트워크, *10월 26일 Damascus 근교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체포된 민간인*, 2017년 10월 27일, <https://bit.ly/2KoolaX>; 시리아인권네트워크, *9월 26일 Damascus 근교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체포된 민간인*, <https://bit.ly/2XUN6ZH>; 시리아인권네트워크, *8월 11일 Damascus 근교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체포된 민간인*, 2017년 8월 11일, <https://bit.ly/3cDkbxl>; 시리아인권네트워크, *시리아 군이 5월 7일 Damascus 교외의 al-Tal 시에서 민간인 체포*, 2017년 5월 7일, <https://bit.ly/3cClhbB>.

¹⁰⁴ “(2020 년) 3 월에 시리아 군은 시리아 정권과 평화 협정을 체결한 지역에서 치안상황을 해결한 개인들을 계속 추격하여 체포하였다. 이러한 체포는 Damascus 교외에 집중되어 왔으며, 주로 대규모 습격 및 구속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 *2020 년 3 월 시리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인권 침해 사례*, 2020 년 4 월 3 일, 제 5 쪽, <https://bit.ly/2RXxjW7>. “시리아 정부는 Damascus 와 그 근교에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정부는 시리아 각 지역의 국내 실향민들이 거주하는 Damascus 시와 가까운 al-Tal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체포해 왔다. 이런 체포는 흔하며 일상이다.”; 덴마크 이민국 (DIS), *시리아: Damascus 의 안보 상황과 시리아 반환 문제*, 2019 년 2 월, www.ecoi.net/en/file/local/2003890/Syrien_FFM_rapport_2019_Final_31012019.pdf, 제 85 항. 시리아인권네트워크, *2월 21일 Damascus 근교의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 2020 년 2 월 23 일, <https://bit.ly/34X2VRI>; 시리아인권네트워크, *10월 20일 Damascus 근교의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 2019 년 10 월 22 일, <https://bit.ly/3eHzbw9>; 시리아인권네트워크, *10월 17일 Damascus 근교의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 2019 년 10 월 18 일, <https://bit.ly/3bu9VaH>; 시리아인권네트워크, *10월 2일 Damascus 근교의 al-Tal 시에서 시리아 군에 의해 체포된 민간인*, 2019 년 10 월 3 일, <https://bit.ly/3cEsfhr>;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 (SOHR), *수십 개의 '평화' 파벌들이 시리아 북부의 군사작전에 징집되기를 거부하면서 Rif Dimashq 의 al-Tal 시에 고조된 긴장감*, 2019 년 9 월 12 일, <https://bit.ly/2KnDzBv>; Syria Call, *시리아 북부 전투에 100 명의 탈영병들이 참전을 거부하자 Damascus 에 도는 긴장감*, 2019 년 9 월 10 일, <https://bit.ly/2xQtew7>; SOHR, *동 Ghouta 와 수도 Damascus 사이의 간선도로로 Damascus 를 향해 동부 Ghouta 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에 대해 강화된 보안*, 2019 년 7 월 7 일, <https://bit.ly/34VDwax>; SOHR, *수도 Damascus 북부의 al-Tal 시에서 정권의 첩보에 의한 여성 등 5명 임시 체포*, 2019 년 4 월 21 일, <https://bit.ly/2RZo9bK>; Syria Call, *Assad 정권의 “강압적 정책”, Damascus 의 습격 및 체포 후 재개*, 2019 년 4 월 18 일, <https://bit.ly/2x22fxq>; SOHR, *징집 및 징집 서비스를 위한 지속적인 운영의 일환으로 Rif Dimashq 의 al-Tal 시에서 체포된 수십 명의 젊은이들*, 2019 년 1 월 27 일, <https://bit.ly/2RYkLOT>; Syria Call, *Rif Dimashq 주 al-Tal 시의 모집단 모집에 매복한 정치적 보안군*, 2019 년 1 월 13 일, <https://bit.ly/2Vsr131>.

¹⁰⁵ SOHR, *중앙정보부가 서 Rif-Dimashq의 al-Tal 시에서 민간인 체포*, 2020년 2월 23일, <https://bit.ly/2XYbXvB>; Syria Call, *아사드 정권, 송금 문제로 다마스쿠스 시골에 거주하는 여성 체포*, 2019년 8월 28일,

42. 시리아 당국은 귀환민들이 시리아로 돌아오기 전에 "신분을 조정"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복귀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했지만,¹⁰⁶ 보안 허가가 승인되는 기준은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귀환 신청에 시리아 당국의 승인 또는 거절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습니다.¹⁰⁷
43. 또한, 정부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전체에 걸쳐, 정부를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 귀환민들은 괴롭힘, 자의적 체포,¹⁰⁸ 외부와 의사소통이 단절된 구금, 고문 및 다른 형태의 학대와 더불어, 재산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¹⁰⁹ [...] 징병

<https://bit.ly/2Krnuvu>; Zaman Al Wasl, *al-Tal*시 : 정권과의 평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체포된 청년들, 2017년 7월 22일, <https://bit.ly/2x3jwBG>; SOHR, 수도 Damascus 북쪽 *al-Tal*시의 Rif Dimashq에서 두 가족을 체포하고 폭력을 가한 보안부, 2019년 5월 6일, <https://bit.ly/2XXKiv4>. Atlantic Council, Ghouta 화해를 깨다, <https://bit.ly/35hivXC>; 시리아인권네트워크, 2019년, 특히 12월 시리아에서 주목할 만한 인권 침해 기록, 2020년 1월 5일, 제5쪽, <https://bit.ly/37KsJ3b>; 유엔인권이사회, 국제 독립 조사 위원회 보고서, 2019년 8월 15일, www.ecoi.net/en/file/local/2016403/a_hrc_42_51_E, 제69항; EIP, 시리아로 돌아간 난민들, 2019년 7월, 제25쪽, <https://bit.ly/2MW5U59>; Syria Direct, Silence, 정부 탈환 1년 후 동 Ghouta 교외에서 사라진 피해망상, 2019년 4월 11일, <http://bit.ly/2mWiOG9>; Middle East Monitor, Idlib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한 가족을 체포한 시리아 현 정부, 2019년 4월 3일, <https://bit.ly/2mfOjtL>.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Damascus 출신 여성과 아동도 시리아 북부 피난 후 남성 친지를 방문하거나 또는 방문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현 시리아 정권 정보부가 시리아 북동부 Qamishli 공항에서 체포된 수십 명의 'Arbin' 여성들을 석방했다, 2019년 10월 18일, <https://bit.ly/34d4Orr>; 시리아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SOHR), 시리아 북쪽에서 돌아온 뒤 Adra시에서 시민 여성 3명을 체포한 공군 정보요원, 2019년 4월 26일, <https://bit.ly/36bcUCG>; SOHR, Rif Dimashq와 주변 지역에서 시리아 북부 파벌 지역으로 이동하려다 체포된 어린이와 여성들, 2019년 3월 20일, <https://bit.ly/31YHLiE>.

¹⁰⁶ "시리아인들은 귀환 후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하면 개인 보안 파일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삭제하는 것을 뜻하는 'tafyish'를 행한다."; ICG,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이 겪는 어려움 완화하기, 2020년 2월 13일, 제 17 쪽, www.ecoi.net/en/file/local/2024712/211-easing-syrian-refugees-plight-in-lebanon.pdf. "국외에서 돌아오거나 내국적으로 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개인들은 난민 반환을 위한 국제적인 관행에 반하는 광범위한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 해외 거주 시리아인들 - 이웃 국가들 또는 유럽 - 또는 국가 내에서 정부의 통제 밖에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제공하기를 요구하지 않는 통로는 없다." (강조 추가); EIP, 시리아로 돌아온 난민들: 위험 요소, 안보 위기, 그리고 정보 부족, 2019년 7월, <https://bit.ly/2MW5U59>, 제 4-5 쪽. 레바논에서 조직적으로 시리아로 돌아오려는 사람들은 레바논 보안국이 운영하는 등록 사무소 중 한 곳이나 귀환 문제에 관여하는 다른 단체에 접근해야 하며, 이는 비밀취급인가를 위해 시리아 당국과 잠재적 귀환민 명단을 공유하게 된다; 카네기 중동 센터 (Carnegie Middle East Center), 화염 속으로, 2019년 9월 11일, <https://bit.ly/2p6vNWH>; US 뉴스, 레바논에서 난민을 고향으로 보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9년 6월 27일, <https://bit.ly/2XDv8v2>; 국제 엠네스티, 질의응답 -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왜 이른지, 2019년 6월 12일, 제 2-3 쪽, <https://bit.ly/35q0kin>.

¹⁰⁷ SAWA for Development and Aid, 귀환에 대해 밝혀며 - 시리아 난민들의 조건과 우려, 2019년 2월 6일, 제 22 쪽, <https://bit.ly/2FEEdCfl>. 워싱턴 포스트, 고향 시리아로 돌아왔지만 기다리는 건 체포와 심문, 2019년 6월 2일, <https://wapo.st/31XSYAG>.

¹⁰⁸ "OHCHR은 계속해서 임의의 체포와 강제적인 실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신고된 사례로는 정부가 각종 정부 보안군을 통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귀환민이 포함된다. 그 사람의 친족들은 가족의 상황, 결과,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었거나 이에 대한 정보 요청에 거부당했다." (강조 추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 위원회 결의안의 이행 2139 (2014), 2165 (2014), 2191 (2014), 2258 (2015), 2332 (2016), 2393 (2017), 2401 (2018)과 2449 (2018), 2019년 12월 16일, S/2019/949, 제 17 항, <https://bit.ly/37M7oq1>.

¹⁰⁹ "(...) 정부 점령 지역으로의 귀환민들은 자의적인 구금, 실종, 암살, 강제 징집, 생계 및 기본적 필요의 박탈의 위험에 처해 있다."; SJAC, 사법부: 시리아 (2020), 2020년 3월 12일, 제 12 쪽, <https://bit.ly/2Y5Zu9p>. "(...) 아사드 정권에 충실하지 않거나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귀환민들을 처벌할 결심을 굳힌 것 같다." 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 터키 동북부 '안전지대'로 송환, 2020년 1월 SWP 논평 1번, 2020년 1월, 제 4 쪽, <https://bit.ly/3eZJBHo>.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부분 사면 승인에 대한 대응으로 시리아로 귀환하는 개인들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유엔 제네바, 정보국 정례 언론 브리핑, 2019년 11월 8일, <https://bit.ly/2r2gKOK>. "귀환민은 괴롭힘, 자의적 체포, 구금, 고문, 강제 실종, 강제 징집 대상자에 속한다고 보고된다."; 유엔인권이사회, 시리아 아랍 공화국 독립 국제 조사 위원회 보고서, 2019년 8월 15일, A/HRC/42/51, 제 8 항, www.ecoi.net/en/file/local/2016403/a_hrc_42_51_E. "해외에서 돌아오는 난민, 시리아 내 다른 지역에서 돌아오는 국내실향민, 또는 조정(reconciliation)을 통해 귀국하는 모든 범주에서 상당한 귀환민들이 체포와 구금되고

연령인 남성도 귀환시 강제 징집 목적으로 체포될 위험에 있습니다.¹¹⁰ [...] 레바논, 요르단, 터키와의 육지 국경, 다마스쿠스 공항에서 입국 즉시 또는 귀국 후 며칠 또는 몇 달 이내에 체포가 발생한다고 보고 되었습니다.¹¹¹ 개인이 귀국 전 시리아 정부의 보안 승인을 받았음에도 체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¹¹² 구금 중이던 귀환민들 중

있다. (...) 특정 위험 대상자들은 보안 허가를 구하지 않고 귀환하기 전에 조정하지 않고 귀환하는 사람, 정부에 반하는 활동을 한 사람(기자, 구호 활동, 지방의회, 구조대원), **징병 연령인 남성**, 그리고 Idlib 이나 Aleppo 로 강제 이주된 가족들 등 체포에 더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험 대상자 프로필에 속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리아 인구를 대상이 지금 체포 및 구금되고 있는데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볼 수 있다. (...) 귀환 중에 체포된 사람들은 나중에 석방되더라도 구금 중에 고문을 포함한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한다. (강조 추가); EIP, **시리아 난민 귀환: 위험, 안전 위기와 정보부족**, 2019년 7월, 제 5-14 쪽, <https://bit.ly/2MW5U59>, 참고. "전반적으로,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 실종, 강제 징집, 국경에서 입국 거부 등 지속적이고 충분히 입증된 보호 우려로 인해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귀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 구금과 실종의 위험은 변함이 없으며, **귀환민들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강조 추가); SAWA for Development and Aid, **귀환에 대한 분석-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과 우려**, 2019년 2월 6일, 29-40 쪽 참고. "신규 기간 동안 활동가, 민방위 자원봉사자, 징집 탈영자, **최근 귀환민 및 기타 반대파 지지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임의로 구금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강조 추가), 2019년 1월 31일; 유엔인권이사회, **시리아 아랍 공화국 독립 국제 조사 위원회**, 2019년 1월 31일, A/HRC/40/70m, 제 73 항, <https://bit.ly/2nHPkvi>. 국제 엠네스티의 리엔 하셈에 따르면, "임의적 체포, 강제 실종, 재산 몰수, 괴롭힘, 사회적 낙인은 (귀환민들에게) 위험"이라고 한다; The National, 2018년 9월 26일 <https://bit.ly/2xPMjuw>, 일부 시리아인들은 체포 당하기 위해 귀국한다, 2018년 9월 26일, <https://bit.ly/2noWXUn>. "(...) 특정 가족 출신들, 야당과의 유착 의혹, 과거 적대국들의 복수 가능성 등에 직면", Refugees Deeply, **위험한 출구: 누가 시리아인의 귀환을 통제하는가**, 2018년 8월 8일, <https://bit.ly/2noWXUn>. The New Arab, **시리아 반대 활동가, 다마스쿠스 귀환 후 '구금'에 대한 두려움**, 2020년 2월 24일, <https://bit.ly/2SILxk5>; 휴먼라이트워치, **레바논에 의해 추방된 시리아인**, 2019년 9월 2일, www.ecoi.net/en/document/2015682.html; 파이낸셜 타임즈, **공포의 기후가 시리아 난민의 귀환을 막다**, 2019년 7월 14일, <https://on.ft.com/2YTBxzF>; NPR, **시리아로 귀환한 수천 명의 난민들은 결국 억류, 감금, 고문당하다**, 2019년 6월 24일, <https://n.pr/2NcsnNn>.

¹¹⁰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징병 연령인 귀환민에게 부여한 유예기간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귀환민은 합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포돼 징집됐다. "징병 연령의 시리아 남성들이 귀환을 시도할 때, 면제 또는 입시사면에 대한 약속과 상관없이 국경에서 강제 징집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본다."; SAWA for Development and Aid, **귀환에 대한 분석-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과 우려**, 2019년 2월 6일, 제 30-31 쪽. "(...) 시리아 정권과 화해협정을 맺어온 개인들이 강제 징집되거나, 다른 경우 체포, 고문, 암살, 살해했다는 보도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귀환민들이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TIMEP, **TIMEP 브리프: 징병법**, 2019년 8월 22일, <https://bit.ly/2Y8sDRw>. SNHR, "시리아 정권은 계속해서 폭력적인 야만적 위협을 가해, 시리아 난민들은 시리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2019년 8월 15일, 제 16 쪽, <https://bit.ly/2NkueOw>.

¹¹¹ "국경에서 정권 요원들이 귀환민의 이름과 여권을 조사한 뒤, 귀환민들을 바로 구금시키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보안기관으로부터 수배 중인 귀환민이 보안군 중 한 명에게 발견되면 즉시 체포된다. 특히 Masna 의 레바논과의 국경, 터키와의 Kasab 국경, 요르단과의 Nasib 국경 등이 그렇다. 귀환민들은 단지 이웃 국가에 거주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일부 귀환민들의 가족들은 이들 중 일부가 시리아로 돌아가기 전에 전세계 다른 나라에서 이웃 나라로 귀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SNHR, "시리아 정권은 계속해서 폭력적인 야만적 위협을 가해, 시리아 난민들은 시리아로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2019년 8월 15일, 제 6 쪽, <https://bit.ly/2NkueOw>. "최근 억류자들은 귀국한 지 몇 달 만에 체포되고 정부에 의해 구금되어 잔혹하게 고문을 당한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EIP, **시리아 난민 귀환: 위험, 안전 위기와 정보부족**, 2019년 7월, 제 23 쪽, <https://bit.ly/2MW5U59>. 또한, Syrian Human Rights Committee (SHRC), **2019년 18차 연례 시리아 인권 상황 보고서**, 2020년 1월, 제 71 쪽, <https://bit.ly/37ZKNGu>; SOHR, **레바논에서 귀국한 후 다마스쿠스 남부 후제이라에서 짧은 남성 체포**, 2019년 12월 27일, <https://bit.ly/37P4xgd>; SOHR, **터키에서 돌아와, 라타키아 시골에서 시리아로 진입 중에 리프 디마쉬크 알탈시에서 온 5명의 짧은이들을 체포하다**, 2019년 9월 25일, <https://bit.ly/2Nkx5pf>; 워싱턴 포스트, **고향 시리아로 돌아왔지만, 기다리는 건 체포와 심문**, 2019년 6월 2일, <https://wapo.st/31XSYAG>; Al-Mashareq, **체포된 시리아 귀환민, 정권에 의해 고문당한 시리아 귀환민**, <https://bit.ly/2N1Opit>; Foreign Policy, **시리아의 귀환 난민을 기다리는 치명적인 환영**, 2019년 6월 27일, <https://bit.ly/2HYBK0r>; Action Group for Palestinians of Syria (AGPS), **시리아 입성 후 체포된 레바논의 팔레스타인 귀환민 3명**, 2018년 8월 28일, <https://bit.ly/2AZTdPC>; 아이리쉬 타임즈, **귀국 시리아 난민 체포 및 고문 보도**, 2018년 3월 17일, <https://bit.ly/2nrAUjk>.

¹¹² "(...) [2019년] 10월 내내 시리아 정부군은 귀환민들이 돌아오기 전에 또는 기존 거주지에 도착한 후 안전한 상황을 확보했음에 불구하고 특히 터키와 카사 국경을 넘어 육로를 통해 여성들을 포함하여 시리아로 귀환하는 난민들을 계속 추격하고 체포했다." (강조 추가); SNHR, **2019년 10월, 시리아 분쟁으로 인한 가장 주목할 만한 인권침해 사례**, 2019년 11월 3일, 제 4 쪽, <https://bit.ly/2r1seSk>.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귀환민들 가운데서도 수백 명의 - 해외에서 들어온 난민을 포함해 반대 무장 단체가 점령한 지역에서 돌아온 국내실향민들과 정부가 탈환한 지역에서 '조정' 절차를 이미 거친 사람들 - 구금과 체포가 보고되었다. (강조 추가); EIP, **시리아 난민 귀환: 위험, 안전 위기와 정보부족**, 2019년 7월, 제 4 쪽, <https://bit.ly/2MW5U59>. SNHR, **2019년, 적어도 4,671 건의**

사망한 경우도 있었으며,¹¹³ 일부 귀환민은 출국을 막기 위해 여권을 압수당했고, 다른 이들은 정기적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¹¹⁴ 또한 일부 귀환민은 자신의 출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보안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이동 제한에 직면될 수 있습니다.¹¹⁵

결론

44. 유엔난민기구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병역거부와 관련된 난민사건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두려움과 1951년 협약의 사유인 정치적 의견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병역거부는 실제의 혹은 전가된 정치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정부기관은 개인의 분쟁 참여 거부를 해당 기관의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탈영이나 기피 자체가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거나 그러한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정 국가의 폭력 사태가 일반화되고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두려움과 1951년 협약상 사유간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유엔난민기구의 지침은 무력 분쟁 사태에서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도피한 사람들 중 많은 경우, 난민 정의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 개인의 박해 위협에 관한 결정은 근본적으로 개인이 출신국으로 귀환하는 경우에 겪을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미래지향적 평가에 기반합니다. 난민 보호를 구하는 개인은 과거 박해 여부와 무관하게, 향후 박해의 위협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국 명령이나 보호 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난민신청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난민 지위나 다른 형태의 국제보호를 "명백히 근거 없거나," "명백히 남용적"이라는 이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
- 난민 지위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은 보충적 보호가 아닌,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따라 정당하게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 시리아에서 강제 징집 또는 예비군 복무를 기피한 사람들은 정치적 의견이나 전가된 정치적 의견 또는 그 밖의 관련된 사유에 근거하여 박해의 근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제 난민 보호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의적 체포를 기록하다, 2019년 1월 2일, 제 15쪽, <https://bit.ly/2QvyllC>; SNHR, 시리아에 폭력적인 야만적 위협을 가하는 시리아 정권, 그리고 시리아 난민은 절대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 2019년 8월 15일, 제 6쪽, <https://bit.ly/2NkueOw>. The National, 일부 시리아인들은 체포 당하기 위해 귀국한다, 2018년 9월 26일, <https://bit.ly/2xPMjuw>.

¹¹³ "(...) 보고에 따르면, 15명의 억류자들은 고문에 의해 사망하였고, 그 중 고문으로 사망한 11명은 레바논에서 귀환한 사람들이었다 (...); SNHR, 시리아에 폭력적인 야만적 위협을 가하는 시리아 정권, 시리아 난민은 절대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 2019년 8월 15일, 제 5쪽, <https://bit.ly/2NkueOw>. 아이리쉬 타임즈, 귀환한 시리아 난민, 체포 및 고문당하다, 2018년 3월 17일, <https://bit.ly/2nrAUjk>.

¹¹⁴ EuroMed Rights, 시리아 귀환 후 사망이나 고문에 직면한 시리아인들에 대한 비호 거부, 2018년 3월 19일, <https://bit.ly/2DDj5zS>; 아일랜드 타임즈, 비호 거부 당한 시리아인들, 귀환하자 고문 또는 죽음 맞이해, 2018년 3월 17일, <https://bit.ly/2nrAUjk>.

¹¹⁵ SAWA for Development and Aid, 귀환에 대한 분석 -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과 우려, 2019년 2월 6일, 제 33쪽, <https://bit.ly/2FEEdCfl>.

[영문 원본의 비공식 번역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영문본을 기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국제난민법과 국제인권법의 필수적으로 구속력 있고 훼손할 수 없는 요소를 구성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가행위가 해당 개인으로 하여금 타국에서의 박해 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 개인을 강제송환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이 발생함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유엔난민기구

2020년 6월